

지역학석사 학위논문

# 일본의 어업수탈과정에 대한 고찰

- 한반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상택

2004년 1월 14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송희선

지역학석사 학위논문

**일본의 어업수탈과정에 대한 고찰**  
- 한반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상 택

이 論文을 卒業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月 14日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송희선

本 論文을 송희선의 地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김 정 하	인
위 원	강 상 택	인
위 원	류 교 열	인

2004. 1 . 14.

# 목 차

Abstract .....	1
I. 서 장 : 연구의 목적과 내용 .....	3
II. 한말 이전의 일본 어업의 침투 .....	5
1절. 조선시대 이전의 남해안에서 일본인 어업 .....	5
2절. 조선전기 왜구의 반어반해적어업 .....	6
3절. 조선중기의 왜구와 삼포왜란 .....	16
III. 한말 일본어업의 성격 .....	22
1절. 메이지 유신과 강화도 조약 .....	22
2절. 메이지시대 일본인 조선 출어의 성격 .....	24
3절. 메이지시대 일본어민의 통어와 이주어업의 성격 .....	34
IV. 일본제국주의 어업식민정책 .....	38
1절. 일본의 부국강병책과 어업 .....	38
2절. 어업식민정책으로서의 보조이주어촌 형성과정 .....	41
3절. 조선총독부의 어업수탈정책 .....	49
V. 맺 는 말 .....	56
참고문헌 .....	58

# ABSTRACT

## The Research to Concerning of the Fishery exploitation of Japan at South Korea Sea.

Hee-Sun, Song

Dept. of East Asia Education

Korea Maritime National University

### Object and Contents of this Research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finding out fishery exploitation of Japan from the late of Chosun Dynasty to the period of colony. Korea has been suffered and invaded by Japanese imperialistic rule according to their diplomatic policy.

In Korea Dynasty, the fishing industry has been shrank and exhausted by Japanese pirate, “Wae-Koo”. Korea also has been invaded by Japanese General Toyotomi in 1592. Korea became a colony of Japan with “the Treaty of Kang-wha”.

Japan became a leader of Asia by learning culture and institutions of Western Country through “Meiji Revolution” in 1868.

From 1840, Korea, Japan, and China opened door to western countries and accepted capitalism. But, the late of 19th, three Asian Countries walked on different way, conquest and submission.

Japanese imperialist caused “the Sino-Japanese War” and

“Russian–Japanese War” and won a victory. Finally, Japan succeeded in being modernized and conquered Korea.

Japanese held a real power in Korean industry, especially fishing industry, and concluded an unequal treaty, such as “the Treaty of Chosun–Japan Trade” (1876), “the Treaty of Chosun–Japan Commerce ” (1883), “the Treaty of Chosun–Japan Fishery Right ” (1889), “the Agreement of Chosun–Japan Fishing Industry ” (1908).

Japanese thought that the development of the fishing industry was root of the national wealth and did their best to develop fishing industry as a national strategy. But, Korean ignored it and had no interest.

Japanese Fisher man entered the Korean coast and established settlement in Korea under the support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re were elite fishery officers and politicians who leaded fishery policy perfectly.

They researched and studied Korean sea and land, and gave an opportunity to make Korea a stepping stone for invading China. The profit of the fisher man was bonded with the invading nature of Japanese nationalism, it could fall down Korean sea as the imperialistic exploitation sea.

We can foresee and prepare the future by leaning history. In this point of view, I would like to consider history of the fishery exploit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 I. 서장 :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는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근대 한일 관계사에 있어서 특히, 어업분야에서 일본이 한반도 남해안에 진출하여 어업을 통해 부국강병과 수탈을 한 사실에 관한 것을 연구하려고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비극을 겪어야만 했고 그들의 국내외 정책에 따라서 「조선정벌」과 「정한론」이 거론되고 침략 당하기도 하였다.

널리 알려진 것만 해도, 고려 5백년은 왜구와 전쟁으로 시작되고 끝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구들에 의한 노략질과 침탈로 어업이 위축되고 어촌이 황폐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쓰시마와 서일본의 어민들은 한반도 남해안의 어장으로 침투하여 조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조업구역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반어반해적적인 어업을 계속하여 왔다.

조선 중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信秀吉)가 일으킨 임진왜란,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 과정의 제물로 삼은 강화도조약으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화로 들어서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와 열강들의 선진문물을 배우며 서구 열강 등의 침입을 경계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맹주의 꿈을 다지기 시작한다. 1840년부터 30~40년 사이에 동아시아 3국은 수백 년 간 폐쇄했던 문호를 개방,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다. 이들 한·중·일 3국은 19세기말에 이르면 제국주의와 식민지 그리고 반식민지 국가로의 길을 걷는다. 일본의 제국주의화에 따른 조선의 식민지화에 강화도조약,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결정적으로 작용되었고, 결국 이것이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일본이 서구 열강들에게 배운 문물과 제국주의화는 조선의 산업, 특히 어업분야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기 시작한다. 조일무역규칙(朝日貿易規則, 1876),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1883),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 1889)과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 1908)의 체결은 일본의 주도하에 이

루어진, 우리의 뜻과 이익과는 전혀 맞지 않고 일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조약이라 하겠다. 일본과 러시아가 민간 포경업을 군사적인 도구로 이용하면서 영토확장과 팽창정책을 이루면서 부국강병의 길을 어업의 선진화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로선 상상도 못한 정책이었다.

더구나 근세 말과 근대초기의 일본은 서구열강의 침입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어업의 발전이 국부의 근간이며, 국부가 곧 海防과 國防으로 직결된다고 하는 산업관과 국방관을 형성하여, 어업과 국가전략 산업의 일환으로 위치시켜 발전시키고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어업산업은 무정책과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물론 어업에 있어서 일본어민들의 한국해 출어와 이주어촌의 형성과정은 개개인의 어민들의 노력도 가미 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지방단체나 정부가 어민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는 리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주도면밀하게 어업정책을 추진해간 엘리트 수산관료나 정치가의 존재가 있었다. 이들은 『조선통어사정』(1894), 『조선산업지』(1900), 『한국수산지』(1908)을 편찬하면서 조선의 바다와 국토 구석구석을 조사하고 이들 자료를 근간으로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어업정책에서 한국해의 통어와 이주어촌의 형성은 결국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와 결탁하여 두터운 보조와 지원아래 한국해의 지배와 어업의 식민화에 첨병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어민 개개인의 이익과 동아시아에서의 맹주를 지향하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해가, 근대 한일간의 어업관계에 있어서 조선의 바다를 제국주의 어업수탈의 바다로 만든 것이다.

흔히 지나간 역사를 알고 배우면 다가오는 미래를 예견하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일간의 어업 수탈사를 다시 한번 고찰해 본다.



## Ⅱ. 한말 이전의 일본어업의 침투

### 1절. 조선시대 이전의 남해안의 일본인 어업

한반도 남해안과 서일본과 쓰시마(對馬島) 등 여러 섬들은 바다를 통해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가깝게 지내왔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특히 조선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에서 이들 일본 어민들은 한반도 어장에서 조업을 하여 왔었고 때론 약탈과 침략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남해안의 좋은 어장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건이 형성되기도 하였지만 고려나 조선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바다를 경시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특히 고려시대에 창궐한 왜구는 관청을 방화하여 지방행정을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된 지배대상인 백성들마저 납치하였기에, 해안 지방의 수 천리에 해당하는 지방은 인적이 없이 無人地帶化하였다고 한다. 왜구는 단순한 약탈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고려의 외교·내정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크나큰 피해를 끼치는, 고려조정은 내륙지방인 철원으로 천도를 계획할 정도로 왜구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큰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구의 피해는 수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명료하다. 당시의 정치규범이 쇠퇴하여 권문·토호들의 착취와 학정에 못 이겨 많은 백성들이 경작이나 어업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결식을 한다든지 깊은 산에 모여들어 왜구라고 사칭하여 폭위를 휘두르는 등 완전히 난세의 시대였다. 왜구는 고려 초기에 있어서는 금·은·미곡 등을 약탈의 주 목표였지만, 후기에는 연안의 어업·목축 등에 더 막대한 피해를 미쳤다.<sup>1)</sup> 이와 같이 고려시대 최대의 국가적 현안은 왜구토벌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쓰시마와 가까운 남해안의 어촌들은 고려말기에 이르면 거의 초토화되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삶의 터전인 어장과 경작지를 버리고 내륙지방으로 이주를 하여 왜구들의 남해안 어업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

1) 요시다 케이치(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1954, 朝水會發行.

국의 어장에서처럼 조업을 하였다. 지리적·경제적 효과가 큰 남해안에서 조업은 생산적인 수단에서 큰 이익이 있음을 판단한 것이다. 곧 이것은 곧 왜구들이 남해안에서 어업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창궐하였던 왜구가 어업을 겸하였다고 확실하게 밝혀진 문헌은 아직 없으나, 그들은 무기와 함께 운반하기에 편리한 낚시구 같은 것을 배에 싣고 한국해로 다니며 때론 고기를 잡다가도 해적으로 돌변하여 조선의 해안으로 침투하여 미곡 및 패어류와 기타 재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면서 한반도 연안 해안에서 어획을 하는 형태의 半漁民半漁海賊漁業<sup>2)</sup>을 자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요시다 케이치(吉田敬市)의 조선수산개발사에서도 일본인들이 순해적으로 업을 삼다가 어업과 무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3)</sup> 이런 점에서 왜구의 한반도 근해에서의 어업은 半漁半海賊이었다고 할 수 있다.

半漁半海賊漁業과 半商半海賊을 하면서도 海賊的인 침탈이나 약탈은 포기하였던 것은 아니다. 조선에서의 왜구의 진압에 強穩兩策을 사용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하고 창궐하기도 하였다.

## 2절. 조선전기 왜구의 半漁半海賊漁業

### 1. 왜구의 半漁半海賊的인 漁業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으로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개국할 무렵에 일본은 긴 내란상태였던 남북조시대(1336~1392년)를 끝내고 통일되었다.<sup>4)</sup>

2) 반어민반해적어업을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반어반적어업이라고 명칭하나 본 논문에서는 反漁反海賊漁業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3) 요시다 케이치(吉田敬市), 앞의 책 79쪽.

4) 남북조시대(1336~1392)는 남조세력인 교토의 교묘(光明)천황과 북조세력인 요시노(吉野)의 고다이천황이 둘로 나누어져 싸우는 시기였다. 남조와 북조는 거의 반세기 동안 대립하고, 지방의 호족도 남북으로 분열하여 내란이 일어났다. 1364년 이후 무로마치(室町)막부 아시카가요시

조선과 일본이 각각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도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수군 강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결국, 쓰시마정벌을 단행하여 왜구 토벌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쓰시마정벌의 의의는 왜구의 근절과 함께 통교정책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쓰시마 왜구를 완전히 섬멸하지는 못했지만 무력행사의 의지를 보여 왜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동시에 쓰시마가 조선에 투항 및 순응을 해옴으로써 세종대의 여러 통교책이 실시되었고 조선이 외교의 주도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쓰시마 정벌 이후 쓰시마는 왜구로부터 이탈하여 조·일 외교와 경제적인 무역의 중계지로 부상하게 되었다.<sup>5)</sup>

이것으로 왜구가 純海賊的 행위에서 어업·무역으로 전향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조선에 투항하여 경상도 관할에 두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하였다.<sup>6)</sup>

이런 투항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쓰시마도주 소사다시게(宗貞茂)의 울릉도 이주계획<sup>7)</sup>에 맞물려서 이종무의 쓰시마정벌의 과정에서 쓰시마도주가 항복을 하면서 쓰시마를 경상도 관할하에 둘 것을 교섭해 온 것을 기술한 것으로 보이며<sup>8)</sup>, 조선 정부에 투항하여 관할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생문제에 있어서 귀속되는 것이 더 이익이 많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한국해의 풍부한 어장과 농토는 쓰시마의 척박한 토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요시다<sup>9)</sup>의 조선수산개발사에서 쓰시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쓰시마는 한일 양국의 중앙에 위치하여, 상대부터 양국교통상의 요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고대부터 거주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쓰시마도주 소사다시게가 태종 7년(1407년) 3월에 쓰시마의 관할권을 양도를 요청한 것은 이런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전혀 미지의 섬에 요청한 것은 언감생심 아니었을 것이다.”<sup>9)</sup>

---

미츠(足利義滿)의 지위가 강화되어 1392년 남북조를 통일시켰다.

5) 이영 공저, 『전근대 한일관계사』, 260쪽

6) 吉田敬市, 앞의 책, 79쪽.

7) 吉田敬市, 앞의 책, 79쪽, 2~5.

8) 이영 공저, 앞의 책, 260쪽 12~15 참고.

9) 吉田敬市, 앞의 책, 79쪽, 1~6. 조선 태종실록 권 13(태종7년 3월)

이런 쓰시마의 척박한 토지와 섬의 특성상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지척에 둔 한국해의 남해안을 침공하여 약탈하는 방식의 생업에서 해적이 주가 되고 어업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主的從屬的漁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주적종속적에 대하여 박구병의 「韓海에 있어서의 日本人의 漁業」에서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왜구의 성격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

고려시대에 창궐하였던 왜구가 어업을 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할지라도, 왜구의 인적 구성면을 고찰할 때 서일본 연해 어민 중에는 왜구로 호칭되는 해적집단에 합류한 자가 적지 않았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무기와 함께 운반하기에 편리한 釣漁具같은 것을 싣고 韓海에 渡來하여 해적으로서 미곡 및 기타 재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한편 약탈성적이 여의치 못할 때는 식량 보충책으로서 또는 부식물조달책으로서 어로를 하였을 것은 단순의 범위를 넘어 확실시되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순수한 통어와 구별하여 半漁半海賊漁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半漁半海賊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 의한 어업을 결코 과대평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구의 본래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약탈행위에 있었던 만큼 그들에 의한 어로행위는 임시적이고 부수적인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 의한 어업은 主賊從漁的 漁業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이러한 왜구 근절의 조선전기 世宗代의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를 거두면서 경제적인 통교자로 변모하여 가기 시작한다. 그러자 이러한 통교를 목적으로 모여든 왜인들이 점차 늘어나서 수 천명의 일본인이 각 포구에 머무르는 상황이 되었다.

---

10) 「한국수산개발사」, 박구병, 『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 196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35~236쪽.

## 2. 三浦倭館

태종7년(1407년)에 우선 興利倭船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를 富山浦(지금의 부산)와 乃而浦(경남 웅천) 두 곳으로 제한하고 이곳에서만 무역을 하도록 하였다. 일본측은 다시 두 곳 외에 임의로 조선의 각 포구에 입항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요구는 거절되고 대신 1426년에 鹽浦(울산)를 개항해 주었다. 이 개항지를 부산포, 내이포, 염포를 삼포라 말하며 이곳에 설치되었던 왜관을 ‘삼포왜관’이라고 부른다.

왜관의 설치의 목적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 일본 사절, 상인, 어민들을 통제하기 위함이지만,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국가 기밀 유지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조선에 체류하는 왜인들을 통제하는 한편, 조선으로는 도항하는 왜인을 제한하는 통제책도 되었다. 그렇지만, 점차 왜인들의 통항과 체제 기간을 연장하면서 恒居倭人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무역상인도 있었지만 쓰시마에서 생활이 어려워 왜관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거나 자국민들을 상대로 술과 음식들을 팔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항거왜인들은 쓰시마도주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타국에 있었고, 조선인과 문화와 습관이 달라 조선 관리들의 단속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해적행위나 어업이나 무역에서도 대체로 관대하게 처리하였던 것이다.

삼포왜관은 조선 안에서의 이국적인 도시 면모를 보이면서 조선 중기 중종(1510년) 때의 삼포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왜인들의 삼포왜관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중종5년(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삼포에는 무역차 왕래하는 왜선의 출입이 허가되었고 포구에는 왜관을 설치하여 교역 또는 왜인접대의 장소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삼포는 왜인의 거류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삼포의 항거왜인은 각종의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 중 일부는 어업에도 종사하였다.

### 3. 어로구역확장을 위한 교섭

삼포개항 이후에 왜관을 통한 일본인들의 어업 이민이 점차 늘어나면서 해상에서의 조업구역이 점점 늘어나는 일본 어민들에 의해서 어장이 좁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쓰시마도주는 삼포에 한한 어업에 만족하지 않고 어장의 확대를 요청해 왔고 지금의 통영·사천·동래와 울산 등 지역에 어업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두었다. 쓰시마도주의 끈질긴 요청에 세종 12년 2월에 결국 삼포 외에 開雲浦(울산)가 어로구역으로 첨가 된 것이다.<sup>11)</sup> 특히 쓰시마 일본인들의 생활에 조선 연안에서의 낚시어업과 소금 무역으로 생활을 지탱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요시다는 조선수산개발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두고 있다.

“세종 10년 2월에 쓰시마도주 소사다시게리(宗貞盛)의 관리가 소금을 가지고 조선의 곡물과 바꾸고 싶다고 말하며 내이포에 정박했지만, 賣買者가 없어서 귀환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연안의 각 관을 시켜서 국고의 陳米豆와 무역을 하게 하고, 교환할 수 있는 소금은 희망자에 매각하게 하기를 요구하기에 왕은 이것을 허락했다.”<sup>12)</sup>

당시 소금이 쓰시마에서 조선과의 무역품의 주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 측에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쓰시마민은 이와 같은 對朝鮮貿易에 의해서 생활을 의지했기 때문에, 조선연안으로의 출어는 쓰시마민에 있어서는 실로 중대문제였다<sup>13)</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세종22년 5월에 소사다시게리가 여러 차례 고·초도에서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기록이 나온다. 쓰시마도주의 거둬드는 청원은 쓰시마 어민들이 남해안의 거문도(고도)<sup>14)</sup>·초도<sup>15)</sup> 등 황금어장에서 몰래 들어와

11) 『한국수산개발사』, 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 박구병, 240쪽, 6~18.

12) 세종실록 권39, 세종10년 2월17일 乙巳

13) 吉田敬市, 앞의 책, 81쪽, 10~14.

14) 거문도 : 서도·동도·고도의 세 섬으로 이루어지며, 고도만을 거문도라 부르기도 한다. 중국 청나라 제독 정여창이 섬에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많음을 보고 문장가들이 많다는 뜻인 巨文으로 개칭하도록 건의하여 거문도가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15) 초도는 여수에서 남서쪽으로 7km, 거문도에서 북쪽으로 18km 해상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솔거섬·안목섬·말섬 등의 작은 섬들과 손죽도·평도·광도 등의 큰 섬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들을 초도군도라고 해도에 나와 있다. 현재 1998년 여수시 삼산면에 속해있다.

서 어로를 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왜구문제를 떠나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남해안 주변 어장을 그들의 어로 근거지로 삼았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쓰시마도주의 거듭되는 애원에 조정에서는 쓰시마도주의 청을 들어주면 고·초도가 왜국에 속하게 될까봐 염려를 하고 허가를 하지 않으면 왜구로 변하여 노략질 할까봐 난상토론에 빠지게 된다. 결국 세종은 쓰시마민이 가없다는 논리로 조건부허가를 하고 만다. 1444년 조어약조(釣魚約條)를 맺어 전라도 고·초도(거문도)의 어업권을 허락해 주었다.<sup>16)</sup> 즉, 文引(증명서)을 주어 내왕하게 하고, 지세포에 보고를 하고 어로를 하게 하면서 만일 문인이 없거나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논죄하여 세를 징수하겠다는 조건부 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의정 申概는 후환을 염려하여 고·초도에서의 왜인의 조어를 불허할 것을 주장하고 潛隱往來하여 밀어를 하는 어선은 병선으로 하여금 나포케 하여 이를 단호히 처벌하는 강경책을 쓸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왕은 찬성과인 영의정부사 황희 등의 의견을 받아 들었다.

이 점은 박구병의 「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에서도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쓰시마왜인에게는 한반도 남해안에 있어서의 좋은 어장의 확보가 그들의 사활문제였던 것이므로 어로구역확장을 위해서는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했던 것이나 조선정부측에서는 그들의 고·초도 조어요청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는 “삼포를 이미 개항하여 교역과 조어를 허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초도 조어를 허락하면 조어를 빙자하여 공공연히 왕래하면서 변경에서 약탈행위를 자행하거나 그 섬에 주거하면서 이를 근거지로 하여 해적행위를 감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본토어민과의 사이에 마찰과 알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sup>17)</sup>라고 조정에 대한 난상토론의 이유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조선수산개발사」에서 요시다도 이런 사안을 “쓰시마도주가 재삼 조어(釣魚)를 청하지 아니하면 안되었던 의미로 판단되고, 또한 당시 그 출어를 희망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면, 예로부터 우리(왜인)가 어민의

16) 이 영 외 공저, 『전근대한일관계사』 한국방송대출판부, 261쪽.

17) 박구병, 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 『한국수산발달사』 196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45쪽.

활동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다”<sup>18)</sup> 하여 쓰시마 어민들이 일찍이 남해안 고·초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쓰시마는 섬 전체가 농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고 산세가 험악하다.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의 기록에도 사면이 모두 돌산이고 토지가 척박하여 백성들은 가난하고 소금을 굽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하여 그것을 팔아서 살고 있다.(중략) 이 섬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데다가 몹시 가난하기 때문에 해마다 쌀을 보내 주도록 되어 있다<sup>19)</sup>라고 신숙주는 기술하였다. 이런 쓰시마의 지리적 또한 섬의 특성상 사유로 어업을 주로 생업을 하고 거제도과 부산포 등에서 조업하기에 좋은 황금어장을 지척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은 일본 본토보다도 오히려 조선과의 교류가 용이하고 문화의 교류가 빈번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고대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약탈과 침략, 현재까지도 문화적, 어업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쓰시마도주의 삼포개항 이외의 곳을 요청하고 또한 어로확장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쓰시마민의 생존권 차원이었음이 명백하다. 조선에서는 왜구들의 근절을 목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왜구의 침공을 막기 위한 유화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4. 辛酉漁業條約

끈질긴 쓰시마도주의 어로구역 확장을 위한 교섭의 결과 세종24년 9월에 대외정책의 유화정책에 힘입어 고·초도 조어는 허락되었다. 그리하여 곧 양국간에 어업협약이 체결되었다. 비록 조항은 몇 가지 되지 않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한·일간에 맺어진 어업협정의 모태로 보아도 될 것이고 왜인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협약을 맺은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체결된 조약의 내용은 「해동제국기」에 釣魚禁約으로 다음과 같이

18) 『조선수산개발사』 吉田敬市, 朝水會, 83쪽 1~1줄.

19) 『海東諸國記』, 신숙주, 쓰시마의 섬의 지리적·경제적·문화적인 면과 쓰시마도주의 가계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규정되어 있다.

“쓰시마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도주의 증명서와 통행증 3통씩을 받아 가지고 지세포(경남 거제도)에 도착하여 그의 통행증을 제출하면 만호(萬戶)는 다시 통행증을 만들어서 지급한다. 고·초도의 일정한 처소 밖에서 함부로 돌아다니는 일은 허락하지 않는다. 어로작업이 끝나면 지세포로 돌아와서 만호에게 통행증을 반환하고 세어(稅漁)를 내놓아야 한다. 만호는 도주가 발부한 통행증에 검인을 찍어 다시 돌려줌으로써 증험으로 삼는다. 만일 통행증이 없는 자나 풍랑을 이기지 못했다고 칭하면서 몰래 무기를 소지하고 변방 도서지대를 횡쓸고 다니는 자가 있으면 도적으로 취급하기로 되어 있다”

「對馬島人，釣魚者，受島主三着圖書文引，倒知世浦，納文引，萬戶改給文引，孤草島定處外，勿許橫行，釣魚畢，環島知世浦，環萬戶文引，納稅漁，萬戶於島主文引，回批着印，環府爲驗，若無文引者，稱不勝食浪，潛持兵器，橫行邊島者，以賊論。」<sup>20)</sup>

여기에서 말하는 고·초도는 세종실록」에 “남해 가운데 있고 육지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累代동안 비워두어 주민이 아직 없다”고 하고 있을 뿐, 더 상세한 설명이 없어 어느 섬인지 밝히기 어려우나 거문도라는 라는 설<sup>21)</sup>과 經國大典에 「孤島草島釣魚倭船」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孤草島는 孤島와 草島의 두 개 섬을 지칭한 것이 이라는 설<sup>22)</sup>이 있다. 현재 海圖上에 나와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 속해 있는 거문도 북쪽의 草島群島의 초도와 거문도의 옛 이름인 고도를 지칭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의 거문도와 초도 주변수역을 통틀어서 지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앞에서 말한 왜인들의 漁稅는 처음에는 大船 500尾, 中船 400尾, 小船 300尾였으나 세종 24년 6월에 쓰시마도주의 요청에 의하여 각각 300尾,

20) 『해동제국기』, 신숙주, 漁業禁止條約, 한국명작대전집, 대양서적, 1972, 154쪽.

21) 『현대 한국수산사』 사단법인 수우회, 고려서적, 1987, 170쪽, 25줄.

22) 『한국수산발달사』, 「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 박구병, 247쪽, 14~248쪽 7줄

150尾, 100尾로 대폭 경감시켜 주었다.<sup>23)</sup>

위의 조약의 3조항과 1개의 별칙 조항으로 만들어진 세종24년 9월의 조약은 그 당시가 辛酉년이므로 「辛酉漁業條約」<sup>24)</sup>으로 불리도 무방할 것 같다(孤·草島 釣魚條約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sup>25)</sup> 한·일간에서의 최초의 어업조약으로 규정되어져 이 조약 내용과 별칙사항에 따른 관리에 대한 기록은 후술하겠지만, 조정에서의 대외정책이 회유와 교린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였다는 인상은 금할 수가 없다.

또한 조선의 해양정책 경시의 일면을 보여 주는 단면을 엿볼 수가 있다. 삼면이 바다로 해변을 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연히 주식량을 농작물에 의존하면서 해산물을 보충적 식량으로 생활을 영위해 왔음은 지역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따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지금과 같이 어자원을 국가의 천연자원으로서 생산 조장이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은 사실상 전무하였고, 조정의 어업에 관한 인식은 다만 오로지 징세 대상으로서의 어업의 존재를 허용한 것뿐이지 그 어장들은 다시 공신, 궁가, 관아, 지방 강호에 독점되어 가렴주구의 대상이었다.<sup>26)</sup> 여기서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을 지낸 호즈미신로쿠로우(穗積眞六郎)의 「朝鮮水産의 發達과 日本」<sup>27)</sup>에서도 위의 언급한 사실이 조선에서 어업이 발달을 하지 못한 원인으로 꼽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종이 쓰시마민들이 불쌍해서 고·초도 어업권을 허락해준 점에서도 그 당시의 조정의 쓰시마 정책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요시다는 이 출어권을 획득한 조약을 일본어업개발사상 획기적인 의의를 달고 있음을 논하고 있음<sup>28)</sup>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紛爭惹起의 근저에는 항상 半漁半海賊의 경영이 잠재되어 있고, 왜구적인

23) 『세종실록』 卷之九十六, 세종24년 6월 丙午

24) 박구병, 한국수산물발달사에서 이 조약을 최초의 어업협약으로 강조하면서 신유어업협약으로命名한다.

25) 『인문과학연구』 제2집, 조선대, 「근대일본의 대한통어정책과 조선어촌과의 관계」, 구양근, 1980, 82쪽 참조

26) 『漁業經濟史를 통해 본 韓國漁業制度 變遷의 100年』 한규설, 선학사, 29쪽

27) 『朝鮮水産의 發達과 日本』, 재단법인 友邦協會, 昭和43年(1968), 27쪽

28) 吉田敬市, 앞의 책, 83쪽 13~16

색채가 다분히 함포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일례로 세조7년 7월에 쓰시마어민 오모테아지라(表阿時羅) 등이 조선인을 살해한 기록과 쓰시마도주의 문인을 받고 無音島附近에서 조선어선 4척을 약탈하고 조선측에 체포된 사실<sup>29)</sup>로 봐서도 왜인들의 조업성격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고·초도에서의 왜인들의 어업은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고·초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조(一本釣)나 연승(延繩)으로 통어와 밀어으로써 계속되어져 왔고, 위의 약정을 준수하면서 조업에 전념한 것은 아니었다. 반어반해적적 성격은 그대로 지닌 채 조업구역이 확장되고 그와 동시에 삼포 항거왜인들의 인구도 점차 증가세로 나타나게 된다. 성종6년(1475년)3월에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한 삼포항거왜인의 戶口數를 표별로 표시하면 다음의 「표1」가 같다.

아래의 성종실록의 자료처럼 당시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들 중 어민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5할로 봐도 호수 215, 인구 1,300여명, 건강한 남성의 2할이 어업에 종사한다 해도 260여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유사시에는 경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될 것이다.

「표 1」 삼포 항거왜인의 호구수

戶口 浦別	戶口	寺院	人口	人 口 構 成								
				壯男	長女	老男	老女	弱男	弱女	壯僧	老僧	弱僧
釜山浦	88	3	350	125	132	6	8	40	34	5	-	-
薺浦	308	11	1,731	607	605	33	19	234	187	41	-	5
鹽浦	34	1	128	42	43	8	8	14	12	-	1	-
合計	430	15	2,209	774	780	47	35	288	233	46	1	5

「표1」 출처 : 「成宗實錄」 卷之五十三 成宗六年 三月 辛亥」

이상으로써 개략적으로 기술한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왜인은 세종때부터 남해안의 거문도(고도)·초도 주변해역에서 밀어와 어업권을 획득하고

29) 吉田敬市, 앞의 책, 85쪽 10~15

이주어민으로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반어반해적적인 약탈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선중기 중종5년 삼포왜란이 발발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 3절. 조선중기의 왜구와 삼포왜란

#### 1. 삼포왜란의 발발 동기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왜관에 거주하는 恒居倭人の 數도 점차 늘어났다. 항거왜인에게는 쌀과 부식 등의 생필품은 물론 토지도 제공되었다. 왜인들이 늘어날수록 국가재정이 궁핍하게 되자 조선은 항거왜인을 줄이고 접대를 간소화하는 등 긴축재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본인들은 왜구화하여 조선의 선박과 어선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조선이 더욱 강경하게 왜관과 일본인들을 통제하자 무력봉기를 단행하였다. 삼포왜란으로 양국 국교는 단절되었고 이후 대일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왜변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대일관계는 악화되고 임진왜란으로 결국 한반도가 초토화되었다.

이상이 개략적인 조선중기의 대일관계를 요약화 해본 것이다. 조선중기와 말기, 특히 삼포왜란과 왜구와의 어업관계에서는, 조선말기는 일본의 근대화과 맞물려 있는 시기이므로 조선중기로서 왜구와의 고찰을 매듭지을까 한다. 그럼 먼저 삼포왜란의 발생배경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

세종 초에는 삼포에 거주하는 항거왜인 수를 60호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항거왜인 수는 1466년~1494년의 약 30년 동안 2배 정도 늘어났다. 수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생활 안정을 위해 건너오는 일본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어민의 수와 어선도 점차 늘어 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항거왜인수가 늘어나면서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지도 늘어났다. 그래서 1494년에는 경작지에 대한 收稅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호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제가 점점 엄격해졌다. 연산군 때는 국가재정이 파탄

에 이르고, 일본인에 대한 자세도 일관성을 잃어 갔다.

성종 이후 일본인에 대한 통제책이 더욱 강화되고, 연산군 때는 실정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조선측의 통제가 강화되자 일본측의 저항도 강해져, 1474~1509년에 왜구의 약탈이 12회나 있었다. 이걸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 외 약탈이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왜구의 침범이 잦아지면서, 양국인들과 사이에 충돌도 잦아졌다. 또한 삼포 항거왜인도 불법출어, 어로 허가구역 외의 수역의 침범, 살인, 부랑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다.<sup>30)</sup>

중종3년(1508년) 11월 2일에 제포에 인접한 가덕도에서 해적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경상도경차관 金謹思를 파견하여 삼포의 수장에게 경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사가 진행중에 전라도 보길도에서 제주도 貢馬를 운송하던 배가 습격 당하자, 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왜관들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 2. 삼포왜란과 사랑진 · 을묘왜변

1509년 4월 6일 쓰시마도주 소키모리(宗材盛)가 죽자, 그의 아들 요시모리(宗義盛)의 도설을 받기 위해 모리아키(宗盛明)가 조선에 파견되었다. 제포와 부산포 항거왜인들은 모리아키에게 사정을 호소하고, 도주에게 부탁하여 무장봉기를 계획하였다. 시모리는 200여 척의 선단을 파견하여, 삼포 항거왜인의 폭동을 도왔다. 1510년 4월 4일 제포·부산포의 항거왜구 등 4천에서 5천명이 제포와 부산포를 공격하는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것이 삼포왜란이다. 15일 만에 진압이 되었지만, 조선인 272명이 피살되고 민가 8백여 호가 불타고, 일본인 선박 5척이 전파되고 3백 명이 참살되는 큰 사건이었다. 조선은 삼포왜란이 발생하자 즉시 쓰시마와의 통교를 중단하였다. 이 난은 조선 전기 조일관계의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

30) 박구병, 앞의 책, 257쪽

그렇지만 삼포왜란 이후에도 왜구들에 의한 왜변은 계속 일어났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랑진왜변과 을묘왜변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사랑진왜변은 1544년(중종 39) 4월 왜선 20여 척이 경상도 사랑진을 침략·약탈해 간 사건이 일어났다. 이 왜변의 주역은 삼포왜란과는 달리 왜구의 일종으로, 피해자수는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은 매우 컸다. 당시 조정에서는 일본인의 도항을 일체 거절하는 절왜론(絶倭論)이 강하게 제기되어, 양국관계는 단교상태가 되었다. 무로마치(室町)막부, 오우치(大内)·쇼니(小貳)를 제외하고는 통교를 단절하였다.

사랑진 왜변 후 명종 말년까지 30여 차례의 왜구침략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1555년(명종 10)에 일어난 을묘왜변이었다. 일본 고토(五島)지방에 근거를 둔 오우초(王直)를 비롯한 대해적단이 1555년 5월 70여 척을 이끌고 전라도 달랑포(전남 해남군 북평면)를 침략하여, 전라병사·장흥부사를 살해하고 영암까지 침입하였다. 달랑왜변에서 퇴각한 해적은 6월말 1,000여 명의 해적을 이끌고 다시 제주도 禾北捕를 침입하였다. 1555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왜변을 을묘왜변이라 부른다. 물론 여기서 왜구들의 근거지는 서일본의 오키섬이나, 오도열도 등이었고 쓰시마를 습격한 후에 침략했다.

### 3. 임신약조

왜란이 진압된지 1년 후에 일본 막부는 승려 호우츄(彌中)를 국왕사로 파견하여, 강화안을 제시하고 통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조선조정에서는 통교단절이란 강경론도 제기되었으나, 마침내 조건부로 화의에 응하였다. 강화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쓰시마도주가 삼포왜란 주모자의 목을 바칠 것, 잡혀간 사람을 송환할 것 등 조선측 요구조건을 이행하였다.

조선정부도 통교가 단절되어 남방의 후추·단목(丹木)의 수입이 어려워졌으므로 완전한 단절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1512년(중종 7)에 임신약조를 체결하여 교역의 재개를 허락하였다.

약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삼포에서의 일본인 거주를 불허한다.
- 나. 쓰시마도주의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으로 줄인다.
- 다. 도주의 歲賜米豆를 200석에서 100석으로 줄인다.
- 라. 쓰시마도주의 特送船制를 폐지한다.
- 마. 도주 일족과 수직인·수직서인의 歲遣船과 세사미두를 폐지한다.
- 바. 도주 파견 이외의 사송선은 敵倭로 간주하여 처단한다.
- 사. 일본 본토의 일본인 중 수직인·수도서인을 정리한다.
- 아. 浦所와 海路를 제한한다.
- 차. 국왕사를 제외한 상경하는 일본인의 무기 휴대를 금지한다 는 9개의 항목이었다.

삼포왜란 이전에 비해 교역조건을 대폭 제한하는 조선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조약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조약체결로 접대비용이 줄고 일본인의 무역 이익도 줄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세견선 수는 210척에서 60척으로 줄었다. 교역 규모가 크게 줄자, 쓰시마도주는 세견선의 증가, 쓰시마내의 수직인·수도선인의 복권과 증가 등을 요구하면서, 무역의 이익을 쓰시마에 집중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1521년(중종 16) 8월에는, 임신약조에 의해 철폐 한 곳으로 제한되었던 浦所에 부산포를 추가하였다.

#### 4. 삼포왜란 이후의 일본인 어업

삼포왜란을 계기로 하여 한국해의 일부수역에서 획득하였던 일본인 어업권은 완전히 박탈당하고 말았다. 중종 7년 對倭國交 再開時에 체결된 壬辰約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인의 삼포에서의 거주를 불허하고, 쓰시마도주의 파 송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가덕도부근에 來泊하는 것은 왜

구로 취급하고, 통로는 제포에 이르는 직항로에 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移住 또는 通漁形態의 어업을 막론하고 한국해에서의 어로는 불법화하였던 것이다.<sup>31)</sup>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는 지금의 자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려고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는 자원을 보호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일본어민들이 왜구화 하여서 침략과 노략질을 병행하는 데에서 파생되는 민생도탄과 치안부재 등의 이유로서 강하게 금지하는 것이었다.

삼포왜란의 발발에서 일본인들의 활약은 요시다(吉田敬市)의 조선수산개발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인들의 수적인 증가로 인한 조선의 경제사정과 조약위반은 목과하고 부산포 부산침사 李友曾(왜란 발발시 피살됨)의 실정과 조선관리의 압박, 그리고 대마어민의 활약으로 변이 발생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32)</sup> 여기서 대마어민의 활약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쓰시마 병선을 의미하겠지만, 이 왜란의 주원인은 어업에 있었다는 점이 왜란의 발발동기가 일본인들의 조약위반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사실과 일치함에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삼포왜인의 어업도 반어반해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조선시대에도 남해안에서의 어업이 왜구들에 의해서 어업생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해안지방의 촌락들은 황폐화되었다.<sup>33)</sup>

또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信秀吉)가 일본의 시코쿠(四國) 및 서해의 어부를 수로안내인으로 삼아 원정군을 파견했다는 사실<sup>34)</sup>은 조선중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어민이 한국해에 꾸준히 출어하여 우리나라 수로를 통달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어민의 대외 출어를 금지하고, 이에 호응하여 왜구들의 침공과 합법적인 통어는 단절되었으나 여전히 밀어적인 경영은

31) 『중종실록』 卷之十六 중종7년 8월 辛酉

32) 吉田敬市, 앞의 책, 89쪽1~6

33) 박구병, 앞의 책, 20쪽 6~11

34) 『대일본수산사』 41쪽, 박구병 앞의 책, 260쪽, 13~15



명치유신 초까지 계속되었다.<sup>35)</sup>

이 쇄국정책으로 쓰시마 및 일본어업도 쇠퇴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호즈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어민들은 고려말기부터 한국해역에 진출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주어민도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결국 일본어민의 조선 이주도 중지되어 버렸고 한국해역의 어업도 쇠퇴해 버리고 말았다.<sup>36)</sup>

---

35) 穗積眞六郎, 朝鮮水産의 發達과 日本, 재단법인 友邦協會, 昭和四十三年, 27쪽 10~14

36) 穗積眞六郎, 앞의 책, 27쪽 6~10.

### Ⅲ. 한말의 일본어업의 성격

#### 1절. 메이지유신과 강화도 조약

##### 1. 메이지 유신

265년간의 도쿠가와 시대를 마감하고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은 근대화 과정을 거쳐 제국으로 도약하였다. 메이지유신이 일본 어업 근대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1868년 1월의 메이지유신은 단순히 정치세력의 교체 이상의 것이었다. 최초의 정치적 결정은 천황·公家·다이묘(大命) 그 대리인들로 이루어진 보수적인 연합을 낳았으며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경제적 개혁의 추세는 결과적으로 불 때 막부의 파괴라는 단순한 행동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유신을 주도해 온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국가를 서구 열강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은 ‘富國強兵’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선진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어업의 선진화 역시 부국강병의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서양 수준에 맞추어 재창조하려는 전략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런 노력의 일환은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朗)가 말한 대로 민족주의로 치닫게 된다는 점<sup>37)</sup>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나중에 우리나라가 식민지화되어서 일제의 병참기지화 하는데 어업 또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37) 『일본문화사』, 이에나가 사부로, 이영 옮김, 까치글방, 1977, 245쪽 19~23

## 2.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성립

1875년 9월의 운요호사건은 조선과의 교섭이 결렬되기 직전 일본의 외무성 관리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의 보고와 요청에서 비롯됐다. 일본측 대표자인 모리야마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는 조선 측과의 회담이 난관에 봉착하자 외무성에 “군함을 파견해 쓰시마근해를 측량하면서 조선의 내홍<sup>38)</sup>에 편승, 협상을 후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지금 저들이 서로 싸우며 쇠국과가 아직 그 기세를 되찾지 못할 때 힘을 사용하면 가벼운 힘의 과시로써도 목적을 이루기는 용이하다고 판단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함 한 두 척을 급파해 … 우리의 힘을 저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일본 외교문서 제8권).<sup>39)</sup>

일본 외무성은 이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 75년 5월 운요호 등 3척의 군함을 조선에 파견했다. 倭船은 부산에서 훈도 현석훈을 승선시킨 상태로 무력시위를 하는 한편, 9월에는 강화도로 북상해 조선의 강화도 포대를 습격하고 영종도를 점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운요호 사건’ 또는 ‘강화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을 개국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正·副使로 한 사절단을 군함 6척과 함께 조선에 파견했다. 이들의 목적은 한마디로 수호조약체결에 있었다. 조선과의 무역, 日人の 거류지, 연해 측량권 등이 보장·확보되는 조약이었다. 일본은 이를 운요호의 배상으로 간주하고 교섭대표에게 조선이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고압적 수단, 즉 무력을 써서라도 관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sup>40)</sup> 조선은 결국 일본의 무력시위 앞에 굴복했다. 강화도 조약이라는 韓日修好條規는 그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양국의 조약이 대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했다. 게다가 조선은 근대조약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그 결과

---

38) 민승호(閔昇鎬)폭사사건

39) 강제연, 『한국 근대사』 한울총서 79권, 1990, 34쪽.

40) 강제연, 앞의 책 35쪽.

맺어진 조약의 내용은 최악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이 구미열강에게서 당하면서 배운 지식을 그대로 조선에 써먹은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일교섭을 맡았던 조선인 관료들은 쇄국정책 하에서 외교교섭 및 무역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 조약의 체결로 인해 조선은 근대 조약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 당한 것 이상으로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이후 독자적 국가운영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 2절. 메이지시대 일본인 조선출어의 성격

### 1. 메이지시대 초기의 조선출어(통어시대)

메이지유신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과의 접촉하는 빈도도 늘어나게 되고 일본인의 한국해에서의 어업진출에 따른 적극성이 활발하게 되면서, 메이지 원년부터 30년까지, 넓게 말하자면 일본 식민지로 떨어지는 시기까지를 보통 通漁時代라고 말한다. 일본을 근거지로 해서 조선에 출어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도쿠가와막부의 쇄국정책과 조선과의 우호를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조선 출어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쓰시마를 비롯한 서일본의 어민들은 밀어적인 어업은 계속 되어져 왔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보아 왔다.(앞의 II장 2절) 1870년(고종8년)의 나카이에 타로우요시(中家太郎吉)가 상어 어업을 목적으로 고토(五島)와 쓰시마를 거쳐서 입국하고, 1875년의 해조류 수입업자인 쓰시마 출신 오이케츄스케(大池忠助)가 부산에서 어업적 상업활동을 하였다.<sup>41)</sup>

이 시기의 특징으로 보면 메이지시기 전에는 서일본이나 쓰시마·오키

---

41) 吉田敬市, 앞의 책, 159쪽. 穂積眞六郎, 앞의 책, 29쪽

등을 근거지로 해서 통어나 밀어적인 어업이나 어업관계를 이루어져 왔지만, 이 시대에는 부산을 근거지로 해서 어업 생산물을 집하하여 일본에 보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한 것이다.<sup>42)</sup> 이는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구한말의 사회적·경제적인 혼돈에서 일본인들이 밀어적인 활동이 별 단속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오이케는 부산수산회사(釜山水産會社)를 창립하여 그 당시 왕성한 어업경영을 하였다.

그리고 1877(고종14, 명치10)년에 부산 근해에 히로시마현의 어업인 4인이 입어하여 어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해 3월 다시 4인이 부산에 와서 상어, 도미 어로를 목적으로 하는 어장 조사를 위하여 통역관을 동반하여 인천까지 답사하고 동년 8월에 귀국했다. 그 결과 1879년부터 낚시 입어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sup>43)</sup>

이 이외에도 다수의 일본인들이 왕래를 하여 일본에서는 통어라고 부르지만 우리측에서 보면 입어자들이 사전에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합법적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수산물 관계를 취급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던 점이다. 결국 해상에서의 노략질을 메이지유신과 한말의 불안정한 정국을 틈타서 일본정부의 비호 하에 묵인되고 장려된 밀매자임에 틀림이 없다.

일본내의 조업구역 분류와 신어업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좁은 어장에서의 어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고 해외로 어업이민이나 원양어업을 장려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 조선의 어장이었다. 조선의 어장은 앞에서 누차 언급했지만 서일본에서는 어업에 대한 경험과 많은 자본력이 들지 않고서도 손쉽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어장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 영세어민들은 자연스럽게 남해안의 황금어장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것은 후에 조선총독부가 조사 파악한 한국수산지 돌산군(현 여수시 돌산도)편에는 일본인이 定住하는 諸島에 “島嶼가 수없이 많고 각종 수산물이 풍부하여, 관로도 머지 않아서 (여수, 광양, 순천 등을 지칭) 남해 유수의 좋은 어장으로서 알려져서 일

42) 穂積眞六郎, 앞의 책, 29쪽

43) 吉田敬市, 앞의 책, 160쪽. 장수호 『수산연구』 15호, 조선왕조 말기에 있어서 일본의 어업침략, 49~50쪽

본인의 어업은 끊임없이 발달을 해 왔다”고 여수근해의 황금어장에 무수한 일본어선들이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주한 일본어민들의 수는 漁戶는 635戶, 어선원과 가족을 포함하여 1,986인이고, 어선은 234척에 어망은 57통, 漁箭 30坐이다.<sup>44)</sup> 구한말의 정부의 무능과 관리들의 부패,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함과 어울려져서 남해안을 초토화시키는 식민지어업 수탈의 서곡이 되었다.

이 무렵 조선의 남해안에 출아한 일본의 漁民들은 2~3개의 島內海로 이루어진 灣內가 광활하고 어떠한 풍파에도 대피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다수 어선의 錨地로 적합하여 그들 韓國海出漁 어민들 사이에 널리 소문이 나있는 三島(巨文島로 東島, 西島, 古島), 그리고 추자도 등을 出稼漁業 근거지로 하여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잦은 분쟁을 야기하면서까지 우리의 어족자원을 마구잡이로 수탈해 갔다.<sup>45)</sup> 이러한 메이지 시대의 조선출어는 전후 일본어업의 구조변화 있어서 일본어업의 자본주의 발달에 대한 意義를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다.<sup>46)</sup>

이러한 밀매와 입어자를 양성화하고 더욱 합법화하게 되는 것은 1883년 7월의 조일무역장정 제41관의 체결에서 상호 입·출어를 인정한 이후부터이다. 그러므로 이전까지의 통어(입어)는 밀어임이 명확하다고 하겠다. 이런 사실은 『朝鮮水産開發史』에서 요시다도 인정을 하고 있다.<sup>47)</sup>

무역장정 제41관은 후술하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일본인의 왜구적인 밀어와 밀매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사실이다. 그럼 이 불평등한 장정의 제41관이 어떻게 문서화되었는가를 강화도조약을 거론하면서 논해 보기로 한다.

---

44) 朝鮮總督府農商工部編纂, 『韓國水産誌』 第三輯, 朝鮮總督府印刷局印刷, 179쪽 참조

45) 『수산업사 연구』 제4권, 1997, 수산업사연구소, 「일제하 추자도 어민항쟁의 진상과 그 성격」 김승, 141-142 참고

46) 新川傳助 『日本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 동양경제신문사, 1958, 15쪽

47) 吉田敬市, 앞의 책, 160쪽.

## 2. 일본어민의 한국해에서의 합법적인 통어(입어) 어업 - 朝日通商章程

무력적인 불평등 조약(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인한 일본 내에서의 산업과 상업적인 반향은 어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급속하게 한국해에 출어하는 어선들이 증가하는데 이는 일본의 어장이 협소한 요인도 있지만, 밀어와 통어를 거치면서 남해안에서 조업을 한 서일본인들의 황금어장에 대한 기대와 고급 魚種들의 소문이 전해지면서 더 증가 추세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러한 기대와 희망에 대한 제동이 걸린 것은 합법적인 아무런 조약이나 규약이 없었던 것이다. 즉 한·일 양국간에 어업에 관해서는 하등의 협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페리제독이 도쿄의 우라가(浦賀)만에 4척의 군함을 이끌고 와서 불평등하게 맺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美日和親條約<sup>48)</sup>을 모델로 삼아서 역시 똑같이 조선에서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맺은 강화도 조약이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어업에 관한 조약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 서남일본인들의 생계에 어로 활동의 중요성을 부과한 점도 있었겠지만,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써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고 북상하는 서구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어업적인 군사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했다는 사실이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국교가 회복되었지만 어업에 관한 조약의 필요성에 따라서 1883(고종20, 메이지16)년에 조선정부에 정식으로 통상조약체결을 강요하여 동년 8월 27일에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조일통상장정으로 약칭)중에 다음과 같은 어업에 관한 일관(一款)을 삽입하여 한국해에서 일본인의 어업을 허가하였다.<sup>49)</sup>

이 통상장정에 의해서 일본어선들은 한국 출어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대거 밀려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일본과 체결된 「通商章程」 제41관(款)

48) 전문과 본문 12개조로 구성된 이 조약으로 일본은 시모다(下田), 하코네(箱根) 등 2개의 항구를 개항해 식량, 석탄, 나무, 식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표류·난파선원을 보호하고 미국인의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삽입되었다.

49) 박구병 『한국수산물발달사』 「韓海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 수협중앙회, 1966, 266쪽.  
穂積眞六郎, 『朝鮮水産の發達と日本』 28~ 29쪽.

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第四十一款」

准日本國漁船 於朝鮮國全羅慶尙江原咸鏡四道海濱 朝鮮國漁船  
於日本國肥前築前石見長門出雲對馬海濱 往來捕漁 但不准私將貨物貿易  
違者將本貨入官 賣買其所獲 魚類 不在批例 至其彼批應納漁稅 及其他細目  
遵遂行兩年後 核其 情況 更行行妥議酌定」<sup>50)</sup>

일본 어선은 조선의 전라·경상·강원·함경의 四道 연안에서 조업을 할 수 있고 조선국 어선도 일본국의 히젠(肥前)·이와미(石見)·나가토(長門)·이즈모(出雲)·對馬島의 해안, 즉 九州北部의 나가사키현, 사가현, 후쿠오카현의 연안, 일본 추고쿠(中國)의 야마쿠치현·시마네현 및 쓰시마(對馬島) 연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다.

이 朝日通商章程의 체결에 의하여 처음으로 정식적인 한국해 출어의 권리를 획득했다.

이것은 외형상으로는 어획권의 相互互惠의 약정서처럼 보이지만, 빈곤과 학정으로 인해서 영세한 어민들이 자본력의 부족과 어업기술력의 부재인 상태에서 일본연안까지 진출해서 조업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정으로 봐선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오랜 기간 왜구들의 약탈과 원양출어가 금지되어 온 조선 어민들이 바다 건너 일본 연안까지 출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사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본어장의 황폐화는 그들의 어민들조차 버려 왔던 일본 연안어장에 조선어민들이 출어 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원시적인 어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조선어민들의 실태와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이 협정은 자국의 어민들을 한국해의 합법적인 출어를 위한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

50) 大韓國政府財政顧問部編纂 『大韓國財政各種法規類』 一二四四面.  
박구병 앞의 책, 267쪽 참고



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조선어민이 출어 할 수 있는 일본해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관동지역을 제외한 전 해역을 조선어민의 출어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히젠(肥前)·이와미(石見)·나가토(長門)·이즈모(出雲)·對馬島의 해안 에 한정하여 지정한 것은 대등한 조약이라는 명분을 나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불평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1)</sup>

여기에서 조선총독부 식산과장을 지낸 호즈미가 본 당시의 조선어업 실태에 관한 연구자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에서는 어업이나 제염 등은 거의 국가가 취급하고, 결국 어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백성은 거의 흥미도 없고, 국가로서도 어업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라든지, 그 어장의 권리를 억압하는 쪽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재원으로서 갖고는 있어도 양반이나 힘있는 자들이 連中 사유화하여, 거의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국가로서는 세금이 거둬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업이나 제염의 쪽에는 구멍이 생기게 되었다. 더욱이 조선은 田稅가 중심으로서, 어업이나 제염 등에 거는 수산관계의 세금 등은 거의 큰 수입은 아니었다. 그리고 거의 세금도 들어오지 않는 사업에 국가가 자금을 너무 들여서 크게 할 까닭도 없었다. 결국 어업이나 제염업도 영원히 발전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었다<sup>52)</sup>”라고 조선의 어업의 현실과 발달하지 못한 이유를 거론하고 있다.

### 3. 근대적 어업협정 체결 - 「朝日通漁章程」

한국해에 출어한 일본 어민들의 입을 통하여 조선어장에 대한 소문이 널리 알려져서 매년 조선으로 출어하는 漁民數는 늘어만 가고, 일본어민들의 출어가 늘면서 나가사키(長崎縣)의 잠수기업자들이 제주도 근해로

51) 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형성』 보고서, 2002 144쪽 참조. 박구병 『韓·日近代 漁業關係研究』 1876~1910년, 부산수대연구보고 7집, 1967, 7쪽 참조

52) 穂積眞六郎, 「朝鮮水産の發達と日本」, 友邦協會, 昭和43년, 27~28쪽 참고.

들어와서 이곳의 전복을 주민들보다 10배의 작업량을 채취하자 생업에 위협을 느낀 島民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sup>53)</sup>

이런 만행 중에 濟州島民들의 거센 항의에 제주통어만은 1년 후로 유예하는 「朝日通漁章程」이 체결되었다. 한국해 출어에 따른 제반 규칙과 수칙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비교적 근대적 체제를 갖춘 어업협정이 1889년 11월 12일에 전문 12개조로 구성된 「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sup>54)</sup> (약칭 조일통어장정)이다.

전문 12條로 구성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통어수속, 어업세, 부칙 등에 관한 것이며 비교적 근대적인 체제를 갖춘 어업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장정의 대략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제1조는 양국의 연안 三海里 以內에 어업을 하고자 하는 양국어선은 그 배의 크기, 선주의 주소성명 및 승선인원을 자세히 기록하여 상대국관계 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어업면허장을 받아야 하고 조업시는 반드시 그 면허장을 휴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승선인수에 따른 세금액과 면허장의 유효기간이 만 일년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어획물은 상대국해안지방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위생상의 견지 또는 기타 사고로 일반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어패류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4조는 고래만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일지라도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상대국의 三海里內 연안에서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5조는 자원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금제에 위반하여 자원보존에 유해한 방법으로써 어획을 하거나 일정한 어패류의 금어기에 어획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제6조는 통어장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국지방관서의 관리는 자국의 3해리 이내의 연안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상대국어선을 검사할 수 있고 위반자가 있을 때는 억류할 수 있지만, 단 조선지방관이

---

53) 『현대한국 수산사』 사단법인 수우회, 고려서적, 1987, 179쪽

54) 일본 자료에서는 「日本朝鮮兩國通漁規則」으로 나와 있다.

일본어선을 억류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最寄일본영사관에 통지하여 통어장정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하는 규정이다.

제7조는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정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상대국 해안 3해리 내에서 어로를 하거나 어로를 하려고 할 때에는 5圓이상 15圓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어획물은 몰수한다는 것이다.

제8조는 각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조의 허가장을 휴대치 않은 자, 제4조를 위반한 자, 제6조의 지방관리의 검사를 거역한 자는 일원이상 이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 제4조를 위반하여 포경을 한 자는 별도로 그 포획한 고래를 몰수하며, 제1조의 승선인수를 속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자는 부족 세금 액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하고, 제3조의 금제어패류를 판매하고 제5조의 자원보호에 유해한 어법으로써 어획을 금제어패류를 포획한 자는 일본연안에서는 해당 지방규칙에 따라 처벌하고 조선연안에서는 일원이상 이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동시에 그 어획물은 몰수한다는 것이다.

제9조는 허가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상대국 해안 3해리에서 어패류를 포획하는 자는 그 어선 어구 및 어획물을 몰수한다.

제10조는 의정지방 외의 해안 3해리 이내에서 어패류를 포획하는 자는 그 어선 및 어획물을 몰수한다.

제11조는 이 장정에 의하여 처벌할 자는 일본국 연안에서는 일본지방재판소에서 처리하고 조선국 연안에서는 그 지방관을 거쳐 가장 가까운 일본영사관에 고소하여 재판케 한다는 것이다.

제12조는 이 장정 시행 후 다시금 증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일통어장정」은 1908년 한·일양국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조일통어장정은 조선과 일본의 형평에 맞지 않고 일본어민들의 권익보호에 치중한 불평등한 조약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약관의 규정은 일방적으로 일본 어민의 한국해안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불평등조약)의 대표

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일본은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만, 조선 측에서는 해상에서의 만국공법과 바다에서 선을 굿듯이 수역을 정하는 해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얼마나 있어서 체결을 했는지 의심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신카와텐스케(新川傳助)가 “메이지이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반도에서 만주로 신장하여 간 것은 어업의 해외진출의 방향을 결정지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이며, 또한 어업에 있어서 자본제 경영 생성의 기초를 이루는 것 되지만, 일본정부가 명치 22년(1889년) 11월, 조선정부와의 사이에 체결한 일본조선양국통상규칙 제1조는 영해 3해리 원칙을 국제적인 어업관계에 적용한 최초의 것이다<sup>55)</sup>라고 알고 있듯이, 비로소 조선의 영해를 3해리로 인정하고, 합법적이고 배타적인 침략적으로 한국해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6)</sup>

4조의 규정 중 조선에서의 고래에 대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마치 염려라도 하듯이, 고래만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일지라도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상대국의 3해리내 연안에서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본의 어업근대화에서 후술하겠지만, 서구 열강들과 러시아의 포경업이 어업을 군사화 하여 해군으로서 이용하면 인접국의 해도나 해상에서의 경험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일본의 군국주의화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포석을 깔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6조의 규정은 조선 어민은 억류할 수가 있지만 조선지방관이 일본어선을 억류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가장 가까운 일본영사관에 통지하여 통어장정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하는 규정이다. 또한 11조에서도 보듯이 처벌할 자는 일본국 연안에서는 일본지방재판소에서 처리하고 조선국 연안에서는 그 지방관을 거쳐 가장 가까운 일본영사관에 고소하여 재판케 한다는 것이다. 우리 어선은 그들이 직접 재판을 행하고, 조선에서 위반한 일본 어선은 일본영사관에서 고소하여 재판한다는 불평등한 규정의 극치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지만 일본이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개국을 강요당하면서 배운 불평등조약이나 협정

55) 新川傳助 『日本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 동양경제신문사, 1958, 37쪽

56) 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형성』 보고서, 2002, 146쪽 참조

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가 조선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이 장정의 문제점으로서 여박동은 “어업세가 지나치게 과소하게 책정되었다는 점과 처벌규정이 너무 관대하다는 점이다. 어업세는 어선 당 승조원 10인 이상은 일본 은화 10엔, 5인 이상 9인 이하는 5엔, 4인 이하는 3엔으로 정하고 면허 기간을 만 1년으로 규정(제 2조)하고 있어, 당시의 일본 잠수기선 1척 당 1개월 간의 제 경비를 공제한 실수입이 340~350엔이 보통이었으므로, 어선 1척 당 연간 어업세 3~10엔은 과소 책정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처벌규정에 있어서는, 규칙 위반자의 처벌을 조선인은 일본 국내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일본인은 일본의 영사재판에 맡겼으며(제 11조), 정식 통어수속 없이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밀어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어업세와 비슷한 금액의 경미한 벌금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1909년 3월 말까지 약 20년간 효력을 지속하였다.<sup>57)</sup>

이 통어장정이 체결된 후에 일본의 수산업은 비약적인 발달을 하게 된다. 호즈미가 강술한 바와 같이 “이 통어장정이 체결된 후, 청일·러일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일본의 어장이 조금씩 좁아지게 되자 외부로 나가야만 하는 정세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트롤같은 큰 자본을 들어서 나가게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영세어민을 어디론가 출어 시켜야만 했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일본어업은 대자본에 의한 자본주의적인 기업발전과 영세어민의 出稼라는 兩方の 발전형태가 취해지게 되고, 또 각자에게 맞는 어장을 찾지 않으면 안게 되었다. 대자본은 점점 남양방면의 어장에 진출하게 되고, 영세어민 쪽은 조선의 어장으로 뻗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되었다<sup>58)</sup>”고 당시의 일본어민들의 해외어장 개척과 조선의 어장 진출에 관하여, 자본력의 차이점에서 영세어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본과 경비가 들지 않는 조선어장의 선호도를 서술하고 있다.

57) 여박동, 앞의 책, 146쪽 참고. 박구병 앞의 부산수대 연구보고 7집, 18쪽 참조

58) 穂積眞六郎, 『朝鮮水産の發達と日本』, 友邦協會, 31쪽 참조.

### 3절. 메이지시대 일본어민의 통어와 이주어업의 성격

#### 1. 메이지시대 통어상의 문제

대체로 일본의 산업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써 해외발전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농업의 방면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만들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진출하여 발전의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어업에서는 각 縣에서 별도로 추진하였다. 예를 들자면 광산의 경우를 봐도 각 縣에서 개별로 나간다는 식은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어업만큼은 국가 뿐 만이 아니라, 각 현에도 그들 현의 어민들의 진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행정상 하나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 기대지 않고, 각 府·縣이 어떻게 하던지 한국해역에서 그들의 어업을 발전시키려고 아주 열심히 하게 된 이유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해통어조합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게 한 이유이다. 한국 남해안에 진출한 漁民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자금의 편의에서 그 밖의 다른 여러 가지 편의를 주고,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각 府縣을 단위로써 적극적으로 通漁를 장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어의 장려에도 불구하고 점차 한국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곧 어민들을 이주시켜서 어업을 영위시켜 나가는 이주어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럼 요시다가 주장하는 통어상의 문제와 일본이 이주어촌을 필요로 한 동기와 이유를 4가지로 말한 것을 살펴보자.<sup>59)</sup>

첫째, 초기의 통어는 대개 영세어민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왕복에 많은 일수를 요하였으며, 어선의 조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다.<sup>60)</sup> 또한 대부분이 단일 경영이었기 때문에 적기에 어로를 하지 못하게 되면, 타직으로 전환이 곤란하고, 때로는 漁期를 잃어버리는 자가 많았다. 그리고 어업자는 대부분이 장년의 남자이며, 더구나 장기에 걸쳐 이 지역에서

59) 吉田敬市 앞의 책, 247~248쪽 참고

60) 『玄界の漁撈民俗』, 楠本 正, 「宗像の漁」 1993, 海鳥社, 97쪽 참고.

활약하기 때문에 풍기 문란이나 사회적으로 우려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통어에서 이주어촌의 경영으로 일보 전진하게 되었다.

둘째, 러일전쟁 경부터 인구증가나 자본주의적 경제의 발전 등으로 대만, 사할린 등으로 식민적 이주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방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 농업이민과 상응하는 이주어촌의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셋째, 청일·러일 전쟁시에는 이들 조선출어 일본인은 군수식량의 조달에 협력하였으며, 일보 전진하여 동아정책의 관점에서 조선에 있어서의 이주어촌의 건설은 허술하게 다룰 수 없는 사항이 되었다.

넷째,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자, 통감부를 설치하여 산업 경제방면에서 근본적인 적극 개발책을 수립하였다. 어업방면에서는 1908년 한국어업법을 발포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어업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종래 한국 궁내부의 직할어장 또는 부호 양반 등의 독점물이었던 중요어장은 널리 韓日 兩國人에 개방되었다.

그러다 1899년(明治32) 6월에 농상무성 수산국장인 마키나오마사(牧朴眞)가 조선연안을 시찰하고 돌아가 13府縣의 조선출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후쿠오카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sup>61)</sup>. 이러한 연유에 일본정부로서도 조선으로 어민을 출어 시키려는 하였지만, 縣으로써도 정부에 대항해서 자기들 현의 어민들을 가능한 한 많이 보내려는 기운이 점점 강하게 되고 이것이 열심히 지도 장려를 시작한 이유이다. 그 중에 오카야마현 등은 특히 열심히 했지만, 그런 지도 장려 결과 1899년(明治33)경에는 보조를 해주고, 장려를 해서 통어에 나갔던 府縣이 1府 23縣이 되고, 통어하는 어선의 수가 6천 척에 2만 수천의 사람이 통어에 해당되었다고 하는 상태에 이르러 왔다고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일본어민의 한국해역으로의 통어하는 데는 매우 발달해 왔지만, 고기를 잡아서 팔아 치우는 근거지는 없었다. 그럼으로써 일본어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통어로서 어획할 수 있는 것은 어획하지만 그 처리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61) 吉田敬市 앞의 책 167쪽 참조, 穂積眞六郎, 『朝鮮水産の發達と日本』, 友邦協會, 32쪽 참조

신카와의 조선출어 운반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조선출어가 발달을 하기 위한 불가분의 조건으로서 독립적인 상업자본을 가진 운반선을 필요로 한 경제적 근거지는 운반선이 이 독립의 상업자본으로서 기능을 한 최초라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 상업자본은 드디어 산업자본으로 전환 되어 현재의 일본어업의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발전했다”<sup>62)</sup>고 하고 이 운반선의 필요로서 최초의 동력 운반선인 第1新生丸이 1907년에 만들어져 조선어장에 진출하여 발전시켰다.<sup>63)</sup>고 운반선이 한국해에서 일본어업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어민들의 조선이주어촌 통어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와 단점들 - 운반선 문제, 언어상 소통장애 기타- 보완하고 요시다가 언급한 대로 동아정책의 하나인 식민지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적극성이 보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술한 동기 중에서도 일본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이주정책과 일본어장의 황폐화와 대비해서 조선내의 좋은 어장 등 어업상의 유리한 조건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이주어촌의 필요성 대두

이처럼 일본어민의 한국해에서 통어는 꾸준히 상황을 이루게 되지만 이윽고 통어의 발달이 자연적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그것은 하나는 통어 그 자체가 근거지 없이 조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이고, 더 큰 하나의 이유는 러일전쟁후 일본의 승리로 인하여 조선이 이제 일본의 손아귀에 놓여 1900년에 조일어업협정을 개정해서 이전에는 전라·경상도에 국한 된 근거지가 전 조선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1908년에 한일어업협정<sup>64)</sup>이

62) 新川傳助, 『日本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 동양경제신문사, 1958, 129쪽 참고

63) 玄界の漁撈民俗』, 楠本 正, 「宗像の漁」1993, 海鳥社, 92쪽 참고. .

64) 1909년 11월 「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 한국어업법의 제정으로 일본어민에게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어업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계기로 통어시대에서 정착어업인 이주어촌시



체결되어, 처음으로 어업권이 조선인과 일본인에게도 인정되었다. 그렇게 되자 부단히 불편한 통어라는 형식은 소용없게 되어버렸고 근거지 정착이라는 편리한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통어가 결코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고 각 현이 주체가 되어, 역시 통어는 계속되어 왔지만, 이제 통어보다도 조선을 근거지로 하는 이주어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또한 이주어촌이 점점 정착형태로 변하여 갔다.<sup>65)</sup>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일본인 통어 어민의 이주어촌이 시작되기 시작하였지만, 그런 경향은 이미 조선말기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주어촌은 어떤 개인이 스스로의 발의로써 이주어촌을 만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각 현에서 통어를 장려해 왔었던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해서 보조를 해 만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경향으로 만들어져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조이주어촌이라는 것은 서류상, 도면상의 계획뿐인 것도 많았기 때문에 결과는 그다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그런 이주어업에 관한 指導나 근거지의 선정을 정부에서 해주고, 감독자를 배치해 주는 등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업기지로써 훌륭한 위치와 건설한 어업감독자가 있고, 더욱이 일본의 보조단체를 통해서 자금유통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지원이 갖추어져 특별히 잘 되고 있었던 곳은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이런 지원이 잘되고 규범적인 자유이주어촌으로서 언제나 인용되는 곳이 오카야마현의 이주어촌인 경상남도 통영군의 미륵도이다. 또한 방어진, 포항, 감포, 추자도, 주문진, 구룡포 등 좋은 어장에 위치한 어업근거지,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는 개항지, 뱀장어 양식지, 건새우 제조지, 포항, 서수라 등의 정치망 어장 등도 어민이 경제적 이익을 찾아 건설한 어촌형태였다.<sup>66)</sup> 여기에서 자율적인 이주어촌과 정부에서 장려하는 보조이주어촌이 대두된다.

이런 일본정부의 보조이주어촌의 의도와 목적은 다분히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배의 첩병으로서 구실을 담당해 간 것이므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가 열린다.

65) 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122~123쪽 참고.

66) 김수희, 『수산업사 연구』 제2권, 「일제하의 일본인 이주어촌의 존재형태」 1995. 8, 수산업사 연구소 162~163쪽 참조

## IV. 일본의 제국주의 어업식민정책

### 1절 . 일본의 부국강병책과 어업

#### 1. 부국강병책으로서의 어업 발전론

근대 일본의 어업의 발전은 메이지유신을 이끌어 낸 소수의 엘리트들이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시켰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쿠가와 막부말기에 외국의 문물을 잘 받아들여 막부에 대항하는 세력인 사쓰마, 죠슈, 히젠 등의 번에서 이런 부국강병책으로 선진문명을 배우고 외국의 우수한 수산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유학까지 보냈다.

이런 선각자들이 세계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수산업의 부국강병책으로서 일본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시아의 맹주를 주창한 사람이 후지카와 산케이(藤川三溪, 1818-1891), 세키자와 메이세이(關澤明清, 1843-1897) 등 엘리트 관료들이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후지카와의 「水産富國強兵論」에서도 유럽의 어업사정을 통달하고 어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는 “英米의 부강은 그 유래하는 바를 살펴보면, 海島를 열어, 海利를 거두어 들여, 이로서 무역을 열고 있는데 있다. 지금 전 지구를 3분하면, 1분은 국토이고, 2분은 해양이다. 일본은 국토의 천 분의 일에 거하고 있다. 지금 활발하게 선박을 내어 海利를 거두어 들여, 천 분의 일로써 국용으로 전 지구의 3분의 2를 사용한다, 또한 좋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부강의 術은 항해의 법에 있다고-무역의 利는 가는 데에 있고, 오는 데에 있지 않으므로, 선박을 많이 해외에 보내는 것, 이것이 급무이다. 말할 것도 없이 신의 나라(神州)의 영기가 모이는 곳, 동양에 홀립(屹立)하여, 사면이 바다로서, 참으로 하늘이 대복전을 부여한 곳이다<sup>67)</sup>고 일본의 지리적 여건에서도 해

67) 桑田透一 『海の先覺者藤川三溪伝』, 水産社, 1940, 177~178쪽. 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61~62, 재인용.

양의 중요성과 부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또한 “서양은 해군을 양성하여, 그 비용은 이를 海利에서 취한다고 듣고 있다. 과연 이 말과 같다면, 우리도 역시 해군을 전 지구의 3분의 2에 양성하여, 천하 무비의 강국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업의 일으킴과 일으키지 않음은 실로 국가의 성쇠에 관계되는 일이다. 원컨대, 국가를 위하여 이 興業을 일으키기를 바란다<sup>68)</sup>”고 강론하면서 어업을 통한 이익을 부국강병으로 연계시키자는 주장이다.

## 2. 제국주의 국가발전론과 한국해와의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수산업 지도자인 세키자와의 어업관은 부국강병으로서의 어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역시 세키자와는 철저한 힘의 논리를 해군과 어업에 접목하여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약과 공법에 있어서 「별과 전갈의 작은 벌레도 독이 있어서 몸은 지킨다」는 비유를 하면서 힘이 있어야 주위 나라들이 두려워한다는 철저한 힘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해군을 강하게 키우는 데는 어업 만한 것이 없다고 역설했다.<sup>69)</sup>

이것은 『조선통어사정』에서도 한국해가 일본의 국방에 있어서 중요성을 알고 한국해 출어를 장려하고 보호 할 것을 주장했다.

즉, “국가적 관념으로 하여 한국해 어업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바다가 8도를 둘러싸 심히 광막하다 하여도, 쓰시마와 마주하는 곳의 경우는 일본해의 인후를 죄어, 경비상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요충지이므로, 쓰시마에서는 이미 육·해군이 이에 대비하고 있으나, 원래 지세의 형세로 보아 육군보다 해군에 무게를 두어야 할 곳이다. 그런데 해군의 준비는 아직 충실하다고 말하기는 할 수 없다. 비록 충실하다고 하여도, 만약 一朝의 유사시에 당하여서는 더욱 이를 보완하는

68) 桑田透一 앞의 책, 177~178. 앞의 책, 179~180 . 여박동, 앞의 책, 62쪽 참고

69) 桑田透一 앞의 책, 177~178쪽.

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업자는 항상 해상에 질주하여 질풍홍파(疾風洪波)를 무릅쓸 뿐만 아니라, 능히 조류의 완급, 해저의 심천, 암초의 유무 등을 숙지하고 있어, 군사상 이를 이용하면 대단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취하여 해병으로 삼는 데에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구미제국에서도 모두 힘을 다하여 어업을 보호 장려한다. (중략) 특히 경비상 그 인후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해에 있어서야, 더욱이 조선남부의 해상은 무수한 島嶼가 있어 기포성산(碁布星散)과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수로가 착잡하여 달리 그 예를 볼 수 없는 곳이다. 현금의 해도는 이를 실지에 비추어 오류가 하나 둘이 아니며, 아직 실측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정사명핵(精查明覈, 자세히 조사하여 실상을 밝힌다)하는 것은 실로 긴요한 일이다.(중략)조선정부는 물론 제 외국과의 교제상의 형편도 있으므로 반드시 뜻대로 신속하게 하게 하기 어려운 사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증도 없으므로, 어업자를 방하여 그 사이에 업을 영위하게 하여 부지불식간에 海里를 암숙시켜 活海圖를 다수 양성하는 것과 같은 속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암숙하기를 기다려 이를 지상의 해도로 하고자 할 때 그들을 사역하면 일이 몹시 용이 할 뿐만 아니라 완급이 있을 때 채용하여 해병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물길 안내로도 이용하여야 하며, 첩자로 하는 데도 족할 것이다. 이것은 경비상에서 보아도 한국해 어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까닭이다.”<sup>70)</sup>고 주창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정세 상에서, 만약 눈을 원대한 점에 두어, 대세를 관찰하면, 러시아가 이미 시베리아 철도의 부설에 착수하여, 조만간 반드시 준공을 볼 것이며 낙성하게 되면, 동아무역상의 장세가 일변하여 諸外國의 선박이 일본해를 거쳐 블라디보스톡 등에 향하는 것이 점차 빈번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면 한국해, 특히 쓰시마와 부산간의 근방은 그 통로가 되니 어찌 경시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 때에는 제 외국의 어선이 많이 모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이의 바다는 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대구와 고래 등의 좋은 어장으로서 시베리아 철도로 그 어획물의

70) 關澤明清, 竹內邦香 공저 『朝鮮通漁事情』 1893, 3~4쪽. 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 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재인용, 33쪽 참고.

판로에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방(일본)은 그에 앞서 미리 해상어업의 주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국권상 결코 안심하지 못할 바가 있는 것이다.”<sup>71)</sup>고 강변하였다.

조선의 지리적인 역할과 한국해의 중요성을 어업적인 경제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국방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일본국가 발전의 대계로 삼았다.

결국 이 당시의 어업의 근대화의 저변에는 침략자로서의 본성과 구미 열강에서 보아 왔듯이 제국주의적인 국가발전론을 어업에서 찾았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에서도 조선통어 어민들을 수로안내인으로 삼아서 조선을 침공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남의 나라에 몰래 측량하여, 일본의 힘이 강해지면 조선을 식민화하여 일본의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전초전으로 조선의 바다를 제물로 삼고 한국해 어업을 장려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선에서 어업의 장려는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의 남하 팽창정책에 대비하여 일본이 제국주의화 하는 데에 대한 걸림돌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도 무시 할 수가 없다. 동해의 포경업에서 러시아의 해군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더 더욱 일본은 이에 대한 국방에 관한 어업의 장려를 한국해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세키자와는 한국해 어업의 장려 보호를 국가적 관념으로 삼았던 것이다.

## 2절. 어업식민정책으로서의 보조이주어촌 형성과정

### 1. 식민지 어업화 과정으로서의 보조이주어촌

앞에서 논한 자유이주어촌과 마찬가지로 일본어민의 한국해 보조이주어촌의 형성 초기에도 주로 한국해에 통어 할 때의 근거지의 필요성에 의하

---

71) 세키자와 공저, 앞의 책, 4~6쪽. 여박동, 앞의 책, 33~34쪽 참고.

여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곧 한국해에서 통어 조업하는 동안에 단점과 폐해를 시정하고, 나아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의 저지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적인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보조이주어촌은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조선어장의 개발 근거지로서 이용되었다. 거문도와 같은 어업근거지 이주어촌에는 병원, 목욕탕, 유곽 등 근대적 시설이 설비되어, 일본인 어업자들은 어업상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었다.<sup>72)</sup>

그리고 메이지 30년경에 들어서면 일본의 연해어장은 포화상태와 자원고갈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는다. 도쿠가와 막부시대부터 메이지 초기에 이르기까지 융성했던 연안어장들이 남획으로 인하여 연안회유를 감소시키고, 경영조직의 불합리로 연이어 쇠퇴함이 원양어업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이다.<sup>73)</sup>

이러한 국내 사정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해 통어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러일전쟁 이전까지에 있어서는 일본원양어업(연해주와 사할린)이 유일한 것이었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의 경제침략에 있어서 김운태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에서 수산침략에 대해서 “어장에 있어서도 일제는 1908년 「한일어업협정」을 강요하여 「한일어민의 보호취제」라는 명목하에 일본인어민의 ‘한국해수산조합’에는 매년 보조금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어업의 실권을 장악하게 했으며 한국어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억압하였다. 또 소위 한국어업법」도 공포하여 어업의 면허제도는 허가제를 실시했는데 1909년 현재의 허가 수는 한국인 5,436인에 대하여 일본인 2,861인에 달하였으나 한국인의 어선 수 12,567척, 인원 75,063인에 대해서 일본인의 어선 수는 3,755척, 인원 15,749인으로 小漁船 수가 3.3배, 인원이 4.8배나 되는 한국인 어업이 그 어선장비의 낙후와 기술의 후진으로 그 어획고에 있어서 일본인 어업과 거의 동일한 정도이고 따라서 1인당 평균 어획고가 일본인의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었다<sup>74)</sup>고 어업수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은 청일전

72) 최길성 『日帝時代 한 漁村의 文化變容』, 아세아문화사.

73) 谷川英一 공저, 『新編 水産學通論』昭和54년(1979), 恒星社厚生閣版, 94쪽 참고.

74) 金素雲,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博英社, 1986, 154~155쪽 참고.

쟁(1894~1895)을 거치면서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발언권의 증대 및 일본국력의 외연적 신장과 보조를 맞추어 조선통어는 한층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 장려를 하는 정책으로 나왔다.<sup>75)</sup> 이러한 결과로 증가 추세에 있던 조선 이주어촌과 통어는 한층 박차를 가한 탓에 계속적으로 일본어민들의 수는 늘어만 갔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이에 일본은 점점 제국주의적 침략의 본성을 드러내고 한반도에서의 발언권의 강화로 그들의 통어구역을 다시 확대, 평안, 충청도 연안까지 확장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이처럼 러일전쟁 이후로는 한국해 전역을 그의 독점적 지배하에 두게 되면서부터는 그들의 한국해 통어는 급격히 발달해 갔다. 러일전쟁에 있어서는 군량조달을 위한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했고, 또 전후 일본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달은 그 基底인 저임금노동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욱 많은 염가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므로 외지 출어가 더욱 더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sup>76)</sup>

## 2. 이주어촌건설에 대한 식민지 정책

어업침략과 수탈의 과정에서 한국해의 보조이주어촌의 형성은 식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지원 정책중 중요한 것은 원양어업장려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외 출어를 조장한 최초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원양어업장려법은 청일전쟁 이후 외연적 신장과 보조를 맞추어 한국해 통어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일본정부는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따라 국가권력의 배경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진 법이다.

이러한 의도 하에 러일전쟁중인 1904년 12월에 일본정부는 농상무성기사 시모(下啓助)와 同期인 야마와키(山脇宗次)를 조선에 파견하여 이주어

75) 박구병, 『한국수산개발사』, 「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 어업」, 293쪽 참고.

76) 박구병, 앞의 책, 311~312쪽 참고.

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였다. 그들의 조사보고는 그 다음해인 1905년 4월에 『韓國水産業調査報告』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다.<sup>77)</sup> 이 보고서에 의하면 “此際에 아국 어민을 기국에 이주시키는 것은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믿는다. 연해의 주요한 곳을 택하여 그곳에 하나의 아국 어민의 촌락을 형성하면 一時의 통어자와는 달리 각종의 어업이 자연적으로 점차 개발될 것이며 그 촌락에 적당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 통어자에게도 需用品の 공급, 어류의 판매제조 등에 적지 않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주어업은 간접적으로 통어의 장려도 되는 것이다<sup>78)</sup>”라고 하여 이주어촌이 통어상에도 필요하고 이주어촌 건설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조사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그들의 연구보고서에도 한국연안의 어업수탈과 어업 식민화의 의도는 명백하게 나와 있다. “장래 영원의 이익을 증진하고, 피아의 행복을 향유하게 하려면 다음의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sup>79)</sup>”고 하여 이주어촌 건설에 대한 일본정부의 식민지 정책을 엿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一. 이주민을 장려하여 한국 각지에 일본인의 취락을 만들 것.
- 二. 한국연해에 우리(일본)어촌을 조직하여, 어민으로 하여금 점차 한국의 풍습에 익숙하게(慣熟)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민을 일본풍에 동화시키는 것에 힘을 기울일 것.
- 三. 前二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을 채택할 것.
  - 가. 어업근거지를 정부에서 설치할 것.
  - 나. 감독자를 두어, 각지에서 이주해 오는 어민을 통일정리해서 질서 있는 어촌을 형성할 것.
  - 다. 근거지는 어업을 위한 開市場으로 간주해, 일본선박의 출입을 자유롭게 할 것.
  - 라. 한국이주를 바라는 지방을 통일하여 그 단결을 꾀할 것

77) 박구병 앞의 책, 318쪽. 여박동 앞의 책, 127~129쪽 참고.

78) 박구병, 앞의 책, 318쪽 참조.

79) 吉田敬市, 앞의 책, 248~249쪽 참조.



마. 前各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청은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

四. 정부는 재정의 사정에 의해 거액의 경비를 지출 할 수 없더라도, 더 더욱 다음의 시설을 위해 필요 있는 것.

가. 상당한 선박을 이용하여 전문기술자를 승선시켜, 조류·低質 등 어장의 상황 또는 수족의 종류·분포 등을 조사해, 이것을 공시해 일반의 방침을 정하게 할 것.

나. 통어자 또는 이주민의 조합을 결성하게 할 것.

다. 이주지에서 단속 내지 업무의 지도를 하게 할 것.<sup>80)</sup>

이러한 조사의 결과 이 조사보고서는 이주어촌의 설정의 필요와 그 구체적인 경영방안에 관해서 후일 최고의 지침서가 되었다. 또, 정부는 원양어업보조규칙을 한국연안 출어에도 적용하여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불해서 그 발전을 꾀한 것은, 한국해 어업이 단순히 경제적 의의뿐만 아니라, 국가적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국해에서의 일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sup>81)</sup>

또한 계속적으로 어업근거지 선정의 표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어장에 가깝고, 출입에 편리할 것
- ② 어선을 계류할 항만이 있을 것
- ③ 어획물 판매에 상당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시장에 가까운 지점일 것
- ④ 어가 기타의 설비를 이루고 있는 외에 채원(菜園)으로 할 수 있는 다소의 여지가 있을 것
- ⑤ 신탄(薪炭)과 음료수를 얻기에 편리할 것
- ⑥ 漁期 외의 계절에 할 수 있는 상당한 부업을 얻기에 편리할 것<sup>82)</sup> 등

80) 吉田敬市, 앞의 책, 249~250쪽, 여박동, 앞의 책 127~128쪽 참고. 新川傳助, 『日本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 東洋經濟新報社, 1958, 1176~118쪽 참고.

81) 吉田敬市, 앞의 책, 250쪽 참고.

82) 下啓助·山脇宗次 『한국수산업조사보고』 1905, 1쪽. 吉田敬市, 앞의 책, 240~250쪽 참고

에 관하여 조사 파악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각 현의 상호 일치된 노력으로 한국해의 출어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어업권의 획득과 이주어촌의 건설도 늘어만 갔다. 히로시마현, 나가사키현, 미시마현, 야마구치현 등 한해와 근접한 서일본의 현에서 이주어촌의 건설을 위하여 어업권의 획득에 분주했다. 「표2」를 참고로 보면 1910년대에서 1911년대의 식민지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다가 점차 안정된 추세를 볼 수가 있다. 역시 광분적인 어업에 관한 이권획득도 한일합방이나 어업령의 발표 등에 의해서 점차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이것은 시대적인 유행으로 끝이 난 것은, 교통의 불편이나 지방 도적들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매력을 잃고 만 것이라 할 수가 있겠다.

「표 2」 이주어촌 건설의 어업권 획득수

년도	1899	1910	1911	1925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계
허가수	12	19	88	96	31	7	1	3	0	2	2	261

출처 : 朝鮮水産開發史, 府縣漁業團獲得漁業圈數, 吉田敬市 著

### 3. 이주어촌 실패의 원인

일본은 한국의 전 연안어장에서 일본측의 끊임없이 합법적인 조업을 가장한 어업수탈의 목적으로 이주어촌을 형성하고 자유로운 통어를 하고 있었다. 당시의 통어선 수는 매년 급증하여 갔다. 1904년도에 1,581척에서 1906년에는 2,747척으로 증가되고, 1908년에는 3,899척, 1910년에는 3,960척으로 급증하고 있다. 역시 「표3」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어획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新川傳助, 앞의 책, 118~119 참조.

「표3」 通漁船數, 人員 및 漁獲

年次	通漁船數(隻)	乘船人員	漁獲改算高(圓)	平均漁獲高	
				一隻當(圓)	一人當(圓)
1904	1,581	6,795	1,499,800	949	205
1905	2,449	10,853	1,854,450	759	264
1906	2,748	12,245	2,014,110	733	164
1907	3,233	14,182	3,739,250	1,157	171
1908	3,899	16,644	3,418,850	877	215
1909	3,755	15,749	3,076,800	819	195
1910	3,960	16,500	3,942,650	996	239

출처 : 朝鮮統治關係資料 『朝鮮財政·金融發達史』,  
「統監府時代の財政」, 社團法人 友邦協會, 1974.

이러한 한말의 자유로운 통어선의 증가와 이주어촌의 형성이 단지 어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제국주의화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어업진진기지의 차원을 넘어서 일본의 침략적 발판으로 삼아서 동아시아를 침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식민지 지배의 침범의 역할을 어업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논리는 신타로의 「일본어업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달」에서도 잘 서술하고 있다.

“근거지(이주어촌)는 어업전문의 경영체를 위한 기지가 아니라, 농업 또는 그 밖의 계절성 산업을 겸업하는 어민,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農漁兼營의 「농업적어업」을 가행(稼行)하는 자를 전제로 하는 점이고, 또한 그 조치는 이들 어민의 집단적 이주이다. 이런 이주집단을 통하여 조선인을 日本國風으로 동화하는 점에 있어서 단순한 이주어민이 아니라, 어업 또는 개별의 제국주의정책의 第一線部隊의 병사들로 차지되는 것이다.(중략) 이주어민은 경영적으로는 조선인 동업자와 동열의 지위에 서서 경쟁을 해야 하는 탓에 조선인의 직장을 침탈한다던가, 또는 그들의 하급 고용인의 지위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sup>83)</sup>고 했다.

83) 新川傳助, 앞의 책, 119쪽 참고.

또 신타로는 이런 식민지형 이주어촌을 “경영체가 아니고 생업이민에 의한 제국주의진출이라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일본자본주의의 미발달의 탓이지만, 이것은 일본자본주의의 모순을 이런 이민(이주어촌)이용으로 거꾸로 제국주의의 도구에 전용했다는 것은, 내부의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역으로 외부에 의해 내부의 일을 해결하는 수단이었고, 식민지국민의 생업을 약탈할 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가장 무자비한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형태이다<sup>84)</sup>”라고 이주어촌의 형성을 식민지 도구로 삼고 조선어민들의 생업을 약탈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런 수탈만 하는 식민지 어업정책이 곧 경영체적인 자본주의적인 어업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도구로써 이용한 것이 곧 이주어촌의 실패를 초래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요시다의 『조선수산개발사』에 이런 이주어촌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一. 이주어민의 선택을 잘 못한 것. 특히 이주어민중에는 성격불량자가 많아, 대부분이 조선의 풍속과 관습을 따르지 않고, 풍토나 어장의 광경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인 이민이고, 따라서 조선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도 못했고, 또 이주어촌내에서의 화합적인 모습을 잃어버려 어촌 자체의 통일의 원활함을 깨뜨린 일.
- 二. 이주어민은 노동이민이었고 자금면의 융통이 없고, 신규의 시설경을 일으킬 재력이나 능력도 없이, 한번 실패하면 재기불능의 경우가 많아, 자본도입의 길도 역시 봉쇄된 점.

또한 이 밖에 이주근거지 선정의 오판과 시설상의 미비, 관청 등의 이주어촌 경영자의 시책 불충분, 적당한 지도자의 결여, 어획물 처리 시설상의 결함, 조선인어업의 발전이 경영상의 경쟁을 불리하게 나타낸 것, 조선 경제의 발전에 동반하여 이주어민 중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 이주어촌 자체들까지 어촌을 떠나고, 그럼으로 애초의 목적인 어촌기능을 상실하기

84) 新川傳助, 앞의 책, 120쪽 참고.

에 이르렀다는 점<sup>85)</sup> 등을 열거했다.

이러한 실패한 이주어촌도 있었지만 꽤 성공한 보조이주어촌도 있었다. 현재 통영군 도남2동에 있는 오까야마촌(岡山村)과 에히메(愛媛)縣의 이리사무라(入佐村, 현 장승포), 同縣의 에히메무라(愛媛村, 현재의 삼천포) 등이 있다.

일본어민이 한국연안에 이주한 연혁은 오래 되었지만 집단이주는 일러 전쟁 이후로써, 통감부 설치 이래도 장려를 하였고 아래 「표4」 일본어민 이주호수 내용같이 점차 이주어촌이나 이주호수 또한 인구도 증가하고, 그 이주는 전국에 걸쳐지만 특히, 경상남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전남·충남·평남·경기의 각 도는 경상남도보다 약했음을 알 수가 있다.<sup>86)</sup>

「표4」 일본어민 이주호수

年 度	漁 村 數	戶 數	人 口
1908		466	2,320
1910	43	1,320	4,9549
1910	45	1,658	6,277

융희4년(1910년) 12월말 현재

출처 : 朝鮮統治關係資料 『朝鮮財政·金融發達史』,  
「統監府時代の財政」, 社團法人 友邦協會, 1974

### 3절. 조선총독부의 어업수탈정책

#### 1. 한일어업협정의 협의서

85) 吉田敬市, 앞의 책, 275~281쪽. 新川傳助, 앞의 책, 120 참고.

86) 조선통치관계자료 「조선재정·금융발달사」, 『統監府時代の財政』, 우방협회, 1974, 330쪽 참고.

1909년 일본정부는 어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러일전쟁 승리의 여파로 한국과 중국에 군사·경제적 패권을 획책하던 그들은 일본 자본주의 발전에 적응하는 어업발전을 기하기 위한 어업에의 금융자본의 적극적 도입 바탕을 어업법 개정에서 찾고 아울러, 부풀어오른 어업세력과 발달된 어구어법의 수용·규제와 함께 어업의 해외신장을 위하여 1902년에 시행한 「어업법」의 개정(87)에 착수한 것이다.

이러한 어업법의 개정(87)에 가장 잘 적합한 곳이 이주어촌일 것이다. 이주어촌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은 1908년 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 한국어업법(별률 29조)의 제정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어업협정의 「협의서」를 고찰해 보자.

#### 「협의서」

- 一. 일본국신민은 한국의 연해, 강만, 하천, 내호지에서 한국신민은 일본국의 연해, 강만, 하천, 及湖池에서 어업을 썩함을 득함.
- 二. 양국의 일방신민으로서 타일방의 관도내에서 어업을 영하는 자는 그 어업을 영하는 자에 한해서 시행하는 어업에 관한 법규를 준수함이 가함.
- 三. 한국의 어업에 관한 법규중 사법재판소의 직권에 속한 사항은 일본국신민에 대하여는 해당 일본관청에서 이를 집행함
- 四. 개국 사백구십팔년 십월 이십일 메이지 이십이년 십일월 십이일 조인한 한일양국통어규칙 기타 양국통어에 관한 협정은 總히 此를 폐지함.(88)

이처럼 1909년(융희3년)4월 1일부터 시행한 두 나라간의 어업협정은 이주어촌 건설의 합법화는 물론이고 이주어촌 형성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협정의 체결과 한국어업법 제정전의 일본어민의 조선이주는 비합법적인 불법이주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들 합법화하고 나아가 한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어업권을 인정하여 조선에서의 거주자를 한하도록 조건을 달아 이주를 유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한국의 연해, 강, 하천 및 湖池에서 어업권을 인정

87) 『어업경제사를 통해 본 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 한규설, 선학사, 69쪽 참고.

88) 박구병, 위의 책, 314쪽.

받아서 한국내의 연안뿐만 아니라 전 내수면에서도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다. 여기 뿐만 아니라 3항에서처럼 한국에 있어 어업에 관한 법규 중 사법재판소의 직권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본인에 대하여는 당해 일본 관청이 집행하기로 하여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정부는 일본인들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도 없도록 제정되었던 것이다.

통감부가 1902년에 제정한 일본의 어업법을 모방하여 서둘러 조선에 서둘러서 제정하게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어업권 제도를 창설하여 중요한 어업권 어업 어장을 일본인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데 있었다. 어업면허 청원은 일본인도 할 수가 있었다. 어업법 시행이후 1개월 정도 지난 1909년 5월 7일까지 농상공부에 청원한 면허건수는 합계 509건이었는데 이를 민족별로 보면 한국인 151건에 비하여 일본인은 295건이었고, 이 밖에 단체가 157건이었다. 1910년에 있어서의 어업면허 처분건수를 보면, 출원건수는 한국인 2,162건, 일본인 976건, 한일공동 270건이었는데 처분건수는 각각 319건, 168건, 54건이었다. 어업면허 출원에 대하여 이의 면허라는 단순한 행정처분만으로 토지보다 훨씬 용이하게 중요 어장이 일본인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합법적인 침탈의 수단은 어업법에 의해서 어업권에 대한 규정이다. 어업권이라는 것은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한국어업법상의 어업권의 면허나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과 신고를 까다롭게 하여,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경험 부족과 면허제, 허가제라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민들을 불법어업자로 만들고 그들은 일본의 관청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 등의 불평등 조건이 일본어민들에게는 한국 이주어촌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이다.<sup>89)</sup>

## 2. 조선총독부의 어업장려 정책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성공과 서구 열강들의 틈새 속에서도 일본의 국

---

89) 최태호, 「일제하의 한국 수산업에 관한 연구」(김문식 외 공저, 『일제의 경제침투사』, 현음사, 1982), 319~334쪽 참고.

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그 첫 번째로 얻은 외교적 승리는 조선의 개국시킨 강화도 조약의 결과였다. 메이지 정부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얻은 것은 서구 열강들에게 일본의 힘을 對内外로 알렸다는 것과 아시아에서(청일전쟁의 승리로) 중국을 대신하여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결정적인 실리는 무역을 통한 이익 무시할 수가 없는 대목이다.<sup>90)</sup> 물론 이런 이득은 동아시아, 한국과 대만 등의 나라에서 얻은 불평등 조약을 통한 착취적 성향이 강한 것이다. 동양척식회사를 통한 한국 내에서의 전 산업을 독점하고 수탈과 착취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제국주의화 과정에서 어업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식민화 정책은 메이지 통치시대에도 지속적인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카모토(岡本信男)가 저술한 「근대어업발달사」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

通漁의 保護助長政策에서 그는 “遠漁獎勵의 形에서 資本制企業에 대한 원양어업을 공개한 것에 대해, 朝鮮通漁는 西日本의 영세한 어민을 개방시킨 새로운 어장이었다. 당연히, 이러한 보호조장이 정부, 지방청, 또는 그러한 것들을 의도했던 단체 등에 의해서 행해졌었다. 일본 경제의 대륙 통과와 길로써, 조선을 일본의 권력 통치하에 두려고 하는 일본의 대방침이 배경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조선 서해안에는 중국어선이 대거 진출하는 것을 목시할 수가 없었다.”<sup>91)</sup> 고 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통어의 경제적 가치는 일본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길에서 서일본의 어민들의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주었고 조선을 일본의 제국화로 가는 통로라는 인식하에 중국어선들의 서해안 진출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어업을 통한 부국강병과 식민지 수탈 정책의 단면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어업수탈 과정에서도 호즈미는 “조선총독부의 방침은 대기업을 불러 넣는 것보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을 육성해 나갈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어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영세한 어

90) 『식민과 제국의 길』 이재광, 나남출판, 1998, 410~411쪽 참고

91) 『近代漁業發達史』, 岡本信男, 水産社, 1965(昭和40), 89~90쪽 참고.



업자들을 보호·육성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조선으로 보냈다”.<sup>92)</sup>고 강술했다.

결국 일제는 모든 분야의 산업 자체가 동아시아, 더 나아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기치아래서 주도면밀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진행 시켰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 3. 조선총독부의 어업수탈화 제도 정비

일제시대 만 35년을 통하여 일본이 식민지에 대한 일관된 기본정책은 한국을 원시산업지역으로 고착화 시켜서 일본의 식량 및 원료공급지로 삼아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삼는 동시에 일본 공업제품의 판매시장으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입각한 일본의 산업정책은 농업개발 제일주의로 나타났으나 농업과 함께 1차산업에 속하는 수산업도 단백질 생산을 담당하는 식량산업이었던 만큼 수산업발달을 농업발달 못지 않게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수산정책의 지상목표를 수산물증산에 두고 황금어장의 개발책을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일제는 한일합방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산업분야 진출을 위한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1911년 6월 「조선어업령」을 공포하여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구분하고 기득권을 부인하여 새로이 면허·허가를 얻지 않으면 조업을 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한국인 소유의 유망한 어장과 왕실 소유의 어장은 일본인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어업구역은 일본인이 독점할 수 있게 재편성되었다. 특히 근대적 기동어업은 일본인에게만 허가하고 한국인에게는 낚시 어업만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어업조합규칙」에 의하여 어업조합을 조직하여 실권을 장악한 3만인의 일본인어민이 20만의 한국어민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sup>93)</sup>

92) 穗積眞六郎, 『朝鮮水産の發達と日本』, 友邦協會, 44쪽 참조.

93) 『韓國現代史』 4, 신구문화사, 1969, 36쪽.

그 결과 1918년의 어업상황을 보면 한국인어업은 일본인과 비교해서 1척 평균 어획고는 약 4분의 1, 그리고 1인 어획고는 약 5분의 1에 불과하여 그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sup>94)</sup>(표 5 참고)

「표 5」 民族別 韓國沿海漁業現況

	出漁船數	出漁人員	漁獲高	1隻 平均 漁獲高	1인 平均 漁獲高
韓國人	39,000	272,077	14,670,068	376	54
日本人	14,119	74,349	18,193,334	1,289	245

출처 : 「最近朝鮮事情要覽」 1929년.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1986, 김운태, 박영사, 재인용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뒤 동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식민지통치의 대행기관을 발족시켰다. 조선총독부의 조직은 總督官房과 總務·內務·度支·農商工·司法府의 5부로 이루어져 있었다. 농상공부는 식산국 및 상공국으로 구성되었고, 수산행정은 식산국이 담당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수탈의 기초작업을 추진시킨 시기인 식민지 통치제1기의 개시와 함께 전 분야에 걸친 제도의 정비를 단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서 수산제도의 정비도 단행하였다.

1911년 6월 3일에 수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본문 29개조, 부칙 7개조의 어업령을 制令 제6호로 공포하였고, 이에 따르는 본문 38개조, 부칙 3개조의 어업령시행규칙을 制令 제67호로 공포하였다. 어업령과 동일부로 본문 15개조, 부칙 3개조의 어업취체규칙(어업단속규칙)을 조선총독부령 제68호로 공포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일본인 출어자의 증가와 더불어 어업령을 보강할 필요가 생겼다.

1912년 2월 16일에 전문 14개조의 어업세령이 制令 제1호로 공포되었고, 동월 23일에는 본문 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어업에 관한 수수료의 건」이 조선총독부령 제89호로 공포되었다.

어업령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어업령시행규칙과 어업

94)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1986, 김운태, 박영사.

취제규칙(어업단속규칙)도 같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됨으로서 구한말의 어업법(1908년)은 폐지되고 식민지하의 새로운 어업제도가 창설된 것이다.

이에 1929년에는 조선어업령을 제정 공포하고 이의 시행규칙을 발표하여 이듬해인 1930년 5월 1일을 기하여 설정한 것이다. 어업권의 설정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얻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면허에 의하여 생기는 어업권은 이를 물건으로 하는 등록제도를 설치하였다. 또한 어업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에 관해서는 이를 등록하고, 어업권의 권리관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반에 주지시킬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업권의 존속기간에 있어서는 종전의 갱신제도에서 연장제로 바꾸고 그 존속기간을 20년까지로 하되 20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새 어업법으로는 1930년에 와서 다시 대폭적으로 개편하게 된다. 어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종전의 법규로는 변화된 어장과 제반 여건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봐서 개편하였던 것이다. 신어업령인 「조선어업령」을 1929년 1월에 제령 제1호로 공포하여 193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조선어업령」은 본문 78개조, 부칙 5개조, 전문 83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다.<sup>95)</sup>

---

95) 한규설, 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 142~144 참고.

## V. 맺는 말

이 연구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기하여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것과 아울러 한반도 남해안을 제국주의 수탈의 장으로 삼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인식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고려와 조선시대에서 서일본의 어민들은 남해안에서 오래전부터 어업을 행하여 왔고 때론 왜구로 변하여 약탈과 침투를 자행하여 조정의 불안과 남해안지방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또한 1883년 7월 25일 조인된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제41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인의 한국영해에서의 통어가 합법적으로 허가된 이후에 많은 일본어민들이 우리 연안, 특히 남해안으로 진출하였다. 일본내 어장의 황폐화와 그들의 동아시아에서의 세력확장의 단면으로 어업 부국강병책을 들고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황금어장의 소문과 일본정부의 부국강병책으로서 통어자와 이주어촌의 수는 날로 증가하였고, 러일전쟁 이후 1910년의 한일합방 시기에 이르러서는 한국에서의 어획고가 한국인보다도 약간 상회할 정도로 일본인들의 어업은 활발하였지만, 곧 이것은 우리 어장의 황폐화와 자원감소로 이어져 갔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은 기계화된 장비로 대규모 어업을 영위하여 일본 주도하의 어업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일본인의 중요한 어업은 그들이 좋아하는 고급어종인 상어, 고래, 삼치, 전복, 해삼, 도미 등을 어획하여 운반선을 통하여 일본내 수요자에게 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어종의 남획과 자원고갈로 인하여 1930년대 이후에는 한국인들의 주요 어종이므로 그들이 잘 잡지도 않던 조기, 대구, 청어 등의 어류도 남획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한국의 전통적인 어업보다 발달한 일본의 선진수산기술은 한국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선진 수산기술은 안강망·정치망·저인망 등과 포경업에서 종래의 어업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서구의 선진 수산기술을 일본을 통해서 전수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국 연안어장은 다양한 일본어구의 전시장이 되었고, 다소 한국의 전통어구보다 능률적인 것이 많았던 것이므로 한국인들도 일본의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만 가고, 점점 일본인의 어구어법으로 동화되어 전통적인 어구어법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연근해에서 수산자원은 점차 황폐화되었다.

일본의 한국해 출어와 이주어촌의 형성은 일본 어민 개개인의 노력과 희생도 있었지만 정부나 지방단체 그리고 수산기술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보조한 것이며, 모범적이거나 성공적인 어촌에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주도면밀하게 어업정책을 추진한 엘리트 수산관료나 정치가의 존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해 어업수탈은, 곧 어민 개개인의 맹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분별없는 이기주의와 일본이라는 국가집단의 야욕이 침략주의와 결합되어 근대의 한일어업관계를 제국주의화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기본 방향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에서 선린교린의 외교정책에 발이 묶여서 일본인들의 해상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던 고려와 조선정부, 또는 만국공법에 무지했던 불평등 조약, 그리고 한일합방으로 인한 어업수탈사를 보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고 바다를 내실화 하면서, 바다의 자원화가 곧 국력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바다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우리의 어업사를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유동운(2000) : 『수산연구』 제14호, 2000 12월, 한국 어업제도 변화의 경제적 성과.
2. 장수호(2001) : 『수산연구』 제5호, 2001 12월, 조선왕조 말기에 있어서 일본의 어업침략(1868-1910년).
3. 수산년감(1968) : 수산학술협회.
4. 『현대한국수산사』 (1987) : 사단법인 수우회, 고려서적.
5. 이병로(1997) : 계명대, 『일본학지 17집』, 일본열도의 「동아시아 세계」에 관한 일고찰.
6. 關澤明清 · 竹中邦香 同編(1894) : 『朝鮮通漁事情』, 東京 團團社書店.
7. 羽原又吉 : 『日本近代漁業經濟史』, 岩波書店.
8. 『한국사』 13(1994) :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1, 한길사.
9. 박구병(1967) : 『부산수대연구』, 7(1), 「한 · 일 근대어업관계연구」 1876~1910년.
10. 『한국수산발달사』 (1966)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 岡本信男(昭和40年, 1965년) : 『近代漁業發達史』, 東京 水産社.
12. 稻井秀佐衛門(昭和12年, 1937년) : 『朝鮮潛水器漁業沿革史』, 조선잠수기어업수산조합.
13. 여박동(2002) :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한국일본학협회 일본문화연구총서 11, 보고서.
14. 『한국사』 33(1997)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후기의 경제.
15. 구양근(1980) : 『인문과학연구』 제2집, 조선대, 1980, 「근대일본

의 대한통어정책과 조선어촌과의 관계」.

16. 최길성 편저(1992) : 『日帝時代 한 漁村의 文化變容』.
17. 新川傳助(1958) : 『日本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 東洋經濟新報社
18. 加藤眞孝(昭和7년, 1932) : 『朝鮮漁業制度要論』, 朝鮮水産會發行.
19. 水田直昌(昭和49년, 1974) : 朝鮮統治關係資料 『朝鮮財政·金融發達史』, 「統監府時代の財政」, 社團法人 友邦協會.
20. 懋積眞六郎(昭和43年, 1968) : 『朝鮮水産の發達と日本』, 財團法人 友邦協會.
21. 山口 精(明治 43年, 1900) : 『朝鮮産業誌』, 券 中, 日韓書房.
22. 존 W. 홀/박영재 옮김(1986) : 『일본사』 역민사.
23. 윤명철(2000) :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사계절.
24. 이 영 공저(1999) : 『전근대한일관계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5. 이재광(1998) : 『식민과 제국의 길』, 나남출판.
26. 吉田敬市(昭和29年, 1954) :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發行.
27. 『韓國水産誌』 (1908) 제1집 :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수산국편찬.
28. 『韓國水産誌』 (1910) 제2집 :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수산국편찬
29. 『韓國水産誌』 (1912) 제3집 : 조선총독부 농상공부편찬, 조선총독부 인쇄국.
30. 김수희 : 『수산업사연구』 제4권, 1997. 12월, 「일제시대 일본인이주어촌」, 수산업사연구소. 용산인쇄국.

31. 허일 · 최재수 · 강상택 · 이창익 외 공저(2001) : 『장보고와 황해 해상무역』, 국학자료원.
32. 김수희(1994) : 『수산업사연구』 제1권, 12월, 「한국근해의 식민지적 어업구조의 창출과정」.
33. 여박동(1993) : 『일본학지』 제14집, 「일제하 통영 · 거제지역의 일본인 이주어촌 형성과 어업조합」, 계명대 일본문화연구소.
34. 여박동(1994) : 『일본학지』 제15집, 「일제시대 거제도 이리사 무라의 형성」, 계명대 일본문화연구소.
35. 여박동(1995) : 『일본학지』 제16집, 「식민지 시기 통영 오까야마촌(岡山村)의 형성. 계명대 국제학연구소. 일본연구실.
36. 여박동(1999) : 『일본학보』 1999. 12월, 「일제시기 히로시마현 에다지마초(江田島町)어민의 한국해 어업관계 연구, 한국일본학회.
37. 김운태(1986) :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38. 현계순(1964) : 『韓末 韓日 魚採問題의 一研究』, 서울대 대학원 논문.
39. 『해동제국기』 (신숙주) : 한국명작대전집, 1972, 대양서적.
40. 『한국사』 (2001) : 9권 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41. 한규설(2001) : 『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 선학사.
42. 황민호(1992) 편저 : 일제하 잡지 발췌 『식민지시대자료총서』, 계명출판.
43. 김수희 : 『수산업사연구』 제2권, 1995. 8월, 「일제하의 일본인 이주어촌의 존재형태」, 수산업사연구소.
44. 김수희 : 『수산업사연구』 제3권, 1996. 9월, 「일제시대 어업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수산업사연구소.



45. 김승 : 『수산업사연구』 제4권, 1997. 12월, 「일제하 추자도 어민 항쟁의 진상과 그 성격」, 수산업사연구소.
46. 김수희 : 『수산업사연구』 제4권, 1997. 12월, 「일제시대 일본인 이주어촌」, 수산업사연구소.
47. 김수희 : 『수산업사연구』 제5권, 1998. 11월, 「일제시대 경남 삼천포에 이주한 일본인 어민에 대해서」, 수산업사연구소.
48. 강재언(1990) : 『한국근대사』, 한울총서 79.
49. 『일본인명』 よみかた 辭典, 그린비, 1990.